

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549호 2014. 12. 15.(월)

【조 례】

제953호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1
제954호	공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24
제955호	공주시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42
제956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48
제957호	공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71
제958호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72
제959호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85
제960호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93
제961호	공주시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금지조례 폐지조례	112
제962호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113
제963호	공주시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130
제964호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135
제965호	공주시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191
제966호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192
제967호	공주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96
제968호	공주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0
제969호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11

【고 시】

제2014-164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215
제2014-167호	도로명 주소 부여 고시	216
제2014-168호	도로명 주소 변경 고시	218
제2014-169호	도로명 주소 폐지 고시	220

【공 고】

제2014-1449호	소하천정비 시행계획 변경공고(다른골외2개소)	222
제2014-1453호	공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32
제2014-1454호	공인 폐기 공고문	250
제2014-1482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공공공지) 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261
제2014-1486호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63
제2014-1491호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공공청사)사업 완료공고	291
제2014-1494호	공주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292

회 람							
--------	--	--	--	--	--	--	--

발행 공주시 (편집 시정담당관 ☎ 840-2051)

《 시 보 발 행 안 내 》

본 「시보」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 및 공주시보 발행규정에 의거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정 및 개·폐사항, 인사, 공고, 고시, 의회의 집회, 개회, 휴회 및 회기의 연장, 의사내용 등을 게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매월(1일, 15일) 2회 또는 수시 발행되오며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배부는 시산하 행정기관 및 이·통장님에게 배부됩니다.
이·통장님께서서는 본 「시보」에 게재된 내용을 이웃 등에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별도 편철 하시어 1년 동안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의회 제17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4. 11. 25)
에서 의결된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인

2014년 12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953호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 부터 제32

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주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공주시 이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공주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자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공주시장(이하 “시장” 이라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채원에 따른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공주시(이하 “시” 라 한다)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절한 수준으로 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안전행정부의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4조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6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 공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시민국장, 안전산업국장, 기획담당관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해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촉직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에 따라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서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 분담에 관한 사항
5.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제1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2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연도마다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

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서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붙여서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함)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1. 신청자를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7조(교부결정)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함)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세무부서 경유)

제18조(교부조건) ① 시장은 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보조금액에 상응하는 비율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
2.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의 완료로 많은 수익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

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

3.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조건. 다만, 공사·제조·용역의 도급계약에 대한 증명서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이외의 방법(세금계산서 등)으로 집행

② 시장은 신청자(단체의 경우 대표자 포함)가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의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교부를 하지 않는다.

제19조(교부결정 통지)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경우에 제18조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급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0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1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

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3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채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붙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24조(정산검사)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3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5조(감독 등)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해서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관계장부, 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6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시작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7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7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은 3년마다 유지 필

요성에 대해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예산을 반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에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시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의
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
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
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
에는 기한을 정하여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발생한 이
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4조에 따라 확정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초과액의 반환
을 명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
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 ⑥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
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같
은 종류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따라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붙여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을 시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안내판 및 외부 부착물 등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임을 명백히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중요재산 현황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30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

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의 변동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해서 안전 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제31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제28조제2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게는 5년의 범위 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32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 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 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 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 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 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33조(지방보조사업자의 계약체결)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호(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공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공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공주시 재향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공주시 발전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공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공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공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공주시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공주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

제4조제2항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공주시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공주시 공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9조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고, 제9조 중 “공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삭제한다.

⑫ 「공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공주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각 호외의 본문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공주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⑯ 「공주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⑰ 「공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⑱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⑲ 「공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⑳ 「공주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㉑ 「공주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㉒ 「공주시 푸른공주사랑21환경추진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㉓ 「공주시 새마을 운동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7조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고, “공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삭제한다.

㉔ 「공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고, 제7조 중 “공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삭제한다.

㉕ 「공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6조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㉔ 「공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제2항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㉕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㉖ 「공주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㉗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㉘ 「공주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각 호외의 본문 및 제13조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㉙ 「공주시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공주시의회 제17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4. 11. 25)
에서 의결된 공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
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인

2014년 12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954호

공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공
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로 한다.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가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의 발주, 과업수행, 최종 성과품의 납품·활용에 이르기까지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타당성 있고, 효율적인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써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정책 수립 또는 주요 현안에 대한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주시와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예산업무 담당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사업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연구용역비로 추진하는 모든 학술연구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사업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규정한 기술용역과

일반용역

3. 국·도비 보조사업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4. 1천만원 미만의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용역과제의 선정) 주관부서는 용역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미 연구된 실적·자료 등의 중복 여부
2.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도시기본계획과의 연계성
4. 용역 추진 상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5. 용역 시행의 기대 효과와 용역 결과의 활용 방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공주시 학술용역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학계, 전문가, 공무원 등 지방재정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 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중복성 검토에 관한 사항
2. 유사·연관 용역과제의 통합발주 방안 검토에 관한 사항
3. 용역 사업계획·수행기간·용역비 등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4. 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②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용역예산 편성을 요구하여야 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용역예산을 편성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의안제출)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은 주관부서의 자체심사를 거쳐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안은 별지 제2호서식의 학술연구용역 심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지시서
2. 원가계산서
3.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해당 연도에 추진한 용역의 결과 평가 및 활용 상황을 점검하고, 다음 연도 용역 사업을 심의하기 위해서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주관부서에서 심의요구가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해서 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토론, 표결의 절차로 진행하며, 의결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⑦ 위원회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공주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이 되고, 회의록과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회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4조(비밀엄수)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그 밖의 사람은 업무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용역실명제) ① 용역발주부서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용역관련 국·단장, 담당관·과장,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직속기관·사업소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주관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제17조(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기간 동안 용역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용역진행상황 점검표를 작성하여 1회 이상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연구자가 연구 일정을 태만히 하거나, 용역 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용역 결과의 공개)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물과 별지 제4호서식의 용역사업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안전행정부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과 공주시 홈페이지에 등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9조(용역 결과 관리)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에서 제시한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5호서식의 용역 결과 활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용역 활용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활용방안을 제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0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학술연구용역 심의 의결서

(년 월 일)				심 의 결 과			
심의 순서	안전 번호	안 건 명					
			원안 가결	수정 의결	부결	심의 보류	

심의위원	성	명	서명
심의위원	성	명	서명
심의위원	성	명	서명
심의위원	성	명	서명
심의위원	성	명	서명
심의위원	성	명	서명
심의위원	성	명	서명
심의위원	성	명	서명
심의위원	성	명	서명

학술연구용역 심의 요청서

제출번호	제	호
------	---	---

용역명	
-----	--

제출자	
제출년월일	년 월 일

용역명

☐ 타기관 공동수행 여부

- ☐
- ☐

☐ 제안이유

- ☐
- ☐

☐ 사업목적

- ☐
- ☐

☐ 외부 용역의 필요성

- ☐
- ☐

☐ 사업내용

- ☐
- ☐
- ☐

☐ 용역기간 :

☐ 계약방법

- ☐

☐ 용역결과의 활용방안

- ☐
- ☐
- ☐

※ 별첨 : 과업지시서, 원가계산서

용역 추진계획 및 유사연구사례 검토보고서

심의 안건 (용역명)	
용역추진 계획	◦ 시행시기 : ◦ 추진일정 등 구체적인 계획 - - -
용역결과의 활용방안	◦ ◦ ◦
유사 선행연구 내역 (최근 5년간)	◦ 용역명 ◦ 주요내용 - - -
기존 연구 용역과의 차별내용	◦ ◦ ◦

[별지 제3호서식]

용역진행상황 점검표

용역사업 개요	○ 사업명 : ○ 주요내용 - -				
용역계약	○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계약금액 : 천원 ○ 계약(용역)기간 : ○ 수탁자 :				
점검일 및 점검자	점검일	점검자	확인자		비고
			용역 소관 업무담당	용역 소관 업무부서장	
점검결과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일정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달성 가능성 - ○ 과업내용에 대한 충실성 - ○ 용역진행상 특이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 용역의 특성 및 과업내용에 따라 점검에 필요한 항목으로 내용 변경 사용				
조치한 사항					

관리번호 : ○○○○ - ○○

용역사업관리카드

(용역명 :)

※ 관리번호는 연도 - 부서별 - 일련번호 순으로 부여한다.

용역사업 계약체결 현황

연구과제명			
부 서 명		담 당 자 (직·성명)	
계약금액	천원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주소, 상호, 대표)			
계약 일반사항	◦ 계약일자 : ◦ 착공일자 : ◦ 중간보고서 제출예정일자 : ◦ 최종성과품 납품예정일자 :		
사업개요	◦ 목 적 : ◦ 연구내용 : ◦ 기대효과 :		
그 밖의 사항			

용역 결과 활용계획서

연구용역명			
연구기간		연구사업비	천 원
목 적			
활용계획			
활용시기			
세부추진일정 및 방법			
기대효과			

용역 결과 활용보고서

연구용역명			
연구기간		연구사업비	천원
목 적			
활용내역			
활용효과			
추후 활용계획			
문제점 및 대책			

공주시의회 제17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4. 11. 25)
에서 의결된 공주시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인

2014년 12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955호

공주시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에게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공주시 무료법률 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무료법률상담실의 명칭은 "공주시 무료법률 상
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② 상담실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담책임관"이란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하고, 무료법률상담 업무 부서장을 말한다.
2. "상담자"란 무료법률상담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상담관"이란 상담자의 상담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상담의 범위) 무료법률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3. 그 밖에 다양한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상담관의 위촉) 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제6조(상담관의 위촉 해제) 시장은 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상담관이 그 직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법률상담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때
4. 상담관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7조(상담방법) ① 상담자는 상담실을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전화·출장 상담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주 1회 이상으로 하고, 상담시간과 요일은 상담책임관이 수요에 따라 확대·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상담처리) ① 방문상담은 즉시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여 즉시답변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하여야 한다.

② 서면 및 출장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회신하여야 한다.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
· 관리하기 위해서 별지 서식의 법률상담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①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담관은 법률상담을 이유로 상담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접 수 번 호		무료법률상담기록부				접 수 일	
No.						. . .	
사건구분 (V 표시)		☐ 민사(부동산, 금전, 손해배상, 임대차, 경매, 기타) ☐ 가사(혼인, 가족관계, 상속, 기타)				☐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신 청 인	성 명					성 별	남 여
	주 소					연 락 처	
	연 령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상담할 내용							
법률상담관 의견							
◦ 상담으로 종결 () ◦ 법률 구조 필요 () ◦ 추가회시 필요 ()							
법률상담관 변호사						(인)	

상담할 내용	
--------	--

공주시의회 제17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4. 11. 25)
에서 의결된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
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인

2014년 12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956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112조부터 제114조까
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30조에 따라 공주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
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하고, 공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소속 행정기관인 직속기관과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인 읍·면·동을 둔다.

제3조(국장·단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 등) ① 시 본청의 국장·단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과장의 직급,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읍·면·동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시 본청

제4조(부시장) 시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 한다.

제5조(국·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부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담당관, 시정담당관, 인사담당관, 미디어담당관, 감사담당관을 둔다.

제6조(국·단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시민국, 안전산업국 및 한시기구인 성장전략사업단을 둔다.

제7조(시민국에 두는 과) ① 시민국에 사회과, 복지지원과, 시민봉사과, 회계과, 세무과, 문화관광과, 문화재과, 교육체육과를 둔다.

② 시민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
2. 복지기획, 복지연계, 행복키움지원, 기초생활보장, 통합조사관리에 관한 사항
3. 노인, 장애인, 여성·다문화, 아동·청소년 보호·육성, 보육 등에 관한 사항
4. 통합민원, 가족관계등록·여권, 차량등록, 컨택센터에 관한 사항
5. 경리, 계약, 재산,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6. 지방세 부과·징수, 지방세 과표 결정, 세외수입, 세입 등에 관한 사항
7. 관광정책, 문화예술, 관광개발, 관광축제, 테마관광 육성에 관한 사항
8. 문화재, 전통사찰, 박물관 및 미술관, 문화재정책 및 보존관리, 사적, 석장리박물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9. 교육정책, 시민교육, 체육진흥,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
10. 문화시설사업소, 복지시설사업소, 시립도서관 업무 전반 및 운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8조(안전산업국에 두는 과) ① 안전산업국에 안전관리과, 기업경제과, 건설과, 산림과, 도시정책과, 허가과, 교통과, 환경자원과, 수도과, 토지과를 둔다.

② 안전산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2. 안전정책, 재난관리, 재해대책, 통합방위, 향토예비군 육성, 민방위, 하천 관리, 통합관제에 관한 사항
3. 기업유치, 기업지원, 산업유통,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 관리, 실업대책 및 노사협력, 전통시장 등에 관한 사항
4. 건설행정, 농업기반조성과 농촌개발, 도로계획, 도로시설, 지역개발, 생활 민원에 관한 사항
5. 산림육성, 산림보호, 임산개발 등에 관한 사항
6.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국토이용계획 수립 및 관리, 도시계획, 도시개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역세권개발에 관한 사항
7. 건축 인·허가·신고, 주택행정, 건축과 관련된 산지전용, 농지전용, 개발 행위, 오수처리시설 설치허가(신고), 축산폐수 배출시설 인·허가 등
8. 교통행정, 교통안전, 차량관리, 가로조명에 관한 사항
9. 환경정책, 환경 보전관리 및 지도, 수질관리, 청소행정, 자원순환, 폐기물, 환경시설에 관한 사항

10. 수도행정, 상·하수도, 지하수 및 상수도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1. 토지행정, 지적관리, 공간정보, 지리정보, 새주소 및 개별공시지가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성장전략사업단에 두는 과) ① 성장전략사업단에 시정발전연구과와 전략사업과를 둔다.

② 성장전략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단 소관 행정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2. 정책개발·연구에 관한 사항
3. 세종특별자치시 등 지역협력사업 및 지역공동화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4. 도농교류에 관한 사항
5. 농촌혁신에 관한 사항
6. 밤 연구에 관한 사항
7. 사곡면 계실리 공공기관 이전 지원 및 주변지역 개발과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8. 공주의료원과 공주소방서 이전 지원에 관한 사항
9.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10. 고도보존육성,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11. 도자문화시설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제10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읍·면에 보건지소를 둔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시장,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소관사무 등) ① 보건소에는 보건과와 건강과를 둔다.

②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③ 보건진료원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3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 사업, 농·축·수산업 정책 등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공주시 우성면 내산목천길 52-15에 둔다.

제14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소관사무 등) ①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정과, 축산과, 농촌진흥과, 기술보급과를 둔다.

② 소장은 「농촌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업, 축산업, 수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종합 기획·조정
2. 농촌 지도사업의 종합 기획 수립·조정
3. 농촌 후계인력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지도
4. 농업인 교육 훈련 및 농업기계 관련 기술지도
5. 농축산물 유통과 직거래 활성화 및 정부양곡에 관한 사항
6. 축산행정 및 내수면 개발·보호에 관한 사항
7. 농업경영 개선, 생활개선에 관한 사항
8.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9. 토양, 비료, 병·해충 예찰 및 농업 환경 보전에 관한 기술지도

10. 지역 특화작물에 대한 현장지도 및 기술개발
11.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존 등 「농지법」에 관한 사항 총괄
12. 그 밖에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장 사업소

제16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7조(소장 및 관장) 사업소에 각각 소장 및 관장을 두며, 소장 및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8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 및 관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시설사업소

가. 시민운동장, 백제체육관, 시립야구장, 문예회관, 국궁장, 곰나루 국민관광지, 곰나루 야외공연장, 곰나루 어린이수영장 등 공공시설의 관리·운영

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대관 및 공공집회에 대한 업무

다.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및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운영

라. 수준 높은 다양한 공연 유치

마. 한옥마을 관리 및 운영

바. 공예공방촌 및 공예품전시판매관, 연지·야생화단지 등 소관 시설 관리 운영

사. 그 밖의 문화시설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복지시설사업소

가. 종합사회복지관 종합 관리 및 운영

나. 나래원의 관리 및 운영

다. 그 밖의 복지시설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시립도서관

가. 「도서관법」에 관한 사항 총괄

나. 시립도서관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운영

다. 도서관(「도서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모든 도서관 포함)의 육성과 서비스 활성화

제5장 읍·면·동

제19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제4항 및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읍·면·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직무) 읍·면·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동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주민등록업무·민원서류발급, 통·반 조직 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하며,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본청과 원활하게 업무를 협의 추진해 나간다.

제21조(읍·면·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면·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2조(부읍·면장의 직위 및 직급) ① 법 제120조(하부행정기구)에 따라 읍·면에 부읍·면장을 둘 수 있다.

② 부읍·면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지방공무원 정원

제23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998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981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7명

제24조(정원책정 기준) ①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

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5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①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은 별표 6과 같이 한다.

③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 등 정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정보감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다목 중 “공공시설관리소, 관광경영사업소, 시립도서관,종합사회복지관”을 “문화시설사업소, 복지시설사업소, 시립도서관”으로 한다.

② 공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담당” 을 “팀장” 으로 한다.

③ 공주시 포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정보감사담당관” 을 “감사담당관” 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행정담당” 을 “시정팀장” 으로 하고 “인사담당” 을 “인사팀장” 으로 한다.

④ 공주시 공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제5항 중 “정보감사담당관” 을 “미디어담당관” 으로 한다.

⑤ 공주시 지역정보화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주무담당” 을 “주무팀장” 으로 한다.

⑥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사회과장, 복지과장” 을 “사회과장, 복지지원과장” 으로 한다.

⑦ 공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4항 중 “사회과장·복지과장·보건소의 보건과장 및 건강과장” 을 “사회과장·복지지원과장·보건소의 보건과장 및 건강과장” 으로 한다.

⑧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복지과장” 을 “복지지원과장” 으로 한다.

⑨ 공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복지과장” 을 “복지지원과장” 으로 한다.

⑩ 공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복지과장” 을 “복지지원과장” 으로 한다.

⑪ 공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민원과”를 “시민봉사과”로 한다.

별지서식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⑫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정보감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민원행정업무담당주사”를 “통합민원팀장”으로 한다.

⑬ 공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정보감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⑭ 공주시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⑮ 공주시 유구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⑯ 공주시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⑰ 공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⑱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제7조제2항 중 “관광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⑲ 공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도로명주소담당” 을 “도로명주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으로 한다.

⑳ 공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시민국장, 안전산업국장, 세무과장, 도시재생과장, 토지과장” 을 “시민국장, 안전산업국장, 세무과장, 도시정책과장, 토지과장” 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업무담당주사” 를 “업무팀장” 으로 한다.

㉑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업무 담당” 을 “공주시 재난관리 기금 업무 팀장” 으로 한다.

㉒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중 “기업유치담당” 을 “기업유치팀장” 으로 한다.

㉓ 공주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안전산업국장, 기획담당관, 복지과장, 문화체육과장, 도시과장, 허가과장” 을 “안전산업국장, 기획담당관, 복지지원과장, 문화관광과장, 도시정책과장, 허가과장” 으로 한다.

㉔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기업지원업무 담당” 을 “기업지원업무 팀장” 으로 한다.

㉕ 공주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농지관리담당” 을 “농촌개발팀장” 으로 한다.

㉔ 공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산림과장”을 “도시정책과장”으로 하고, “관련 업무 담당”을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㉕ 공주시 건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건축담당”을 “건축허가팀장”으로 한다.

㉖ 공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교통안전업무담당”을 “교통안전업무팀장”으로 한다.

㉗ 공주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센터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안전산업국장, 보건소장, 기획담당관, 환경과장”을 “안전산업국장, 보건소장, 기획담당관, 환경자원과장”으로 한다.

㉘ 공주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환경관리담당”을 “환경정책팀장”으로 한다.

㉙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기획담당관, 도시재생과장, 환경과장, 청소과장”을 “기획담당관, 도시정책과장, 환경자원과장”으로 한다.

별지제4호서식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㉚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부시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과장, 축산과장, 농촌진흥과장, 기술보급과장, 산림과장”을 “부시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축산과장, 농촌진흥과장, 기술보급과장, 산림과장”으로 한다.

㉛ 공주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 설치 및 부품센터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제2호서식, 별지제3호서식, 별지제4호서식, 별지제7호서식 중 “담당” 을 “팀장” 으로 한다.

③④ 공주시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시정담당관, 기획담당관, 복지과장, 농업과장, 축산과장” 을 “기획담당관, 시정담당관, 복지지원과장, 농정과장, 축산과장” 으로 한다.

제15조제2호 중 “복지과장” 을 “복지지원과장” 으로 한다.

제15조제3호 중 “농업과장” 을 “농정과장” 으로 한다.

③⑤ 공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농업과장, 복지과장” 을 “농정과장, 복지지원과장” 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여성농업인 정책업무담당” 을 “여성농업인 정책업무팀장” 으로 한다.

③⑥ 공주시 쌀중합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주무담당” 을 “주무팀장” 으로 한다.

③⑦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3항 중 “공공시설관리소장” 을 “문화시설사업소장” 으로 한다.

③⑧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중 “공공시설관리소장” 을 “문화시설사업소장” 으로 한다.

㉔ 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1호 중 “복지과장”을 “복지지원과장”으로 한다.

㉕ 공주시 지적재조사·경계결정 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제19조제1항 중 “업무담당주사”를 “업무팀장”으로 한다.

㉖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업무담당주사”를 “업무팀장”으로 한다.

별지제5호서식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㉗ 공주시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홍보업무담당주사”를 “공보팀장”으로 한다.

㉘ 공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시정담당관”을 “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제3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개편 관련 인사 발령부터 적용한다. 다만, 부단체장 직급을 3급으로 상향하는 규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7항의 개정 규정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10조제3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공주시 보건소	공주시 의당로 23	공주시 전역
공주시 유구보건지소	공주시 유구읍 유구초교길 40	유 구 읍
공주시 이인보건지소	공주시 이인면 검바위로 239	이 인 면
공주시 탄천보건지소	공주시 탄천면 통산3길 4-11	탄 천 면
공주시 계룡보건지소	공주시 계룡면 월암송정길 10	계 룡 면
공주시 반포보건지소	공주시 반포면 수실1길 8-8	반 포 면
공주시 의당보건지소	공주시 의당면 의당로 257 (종합사회복지관내)	의 당 면
공주시 정안보건지소	공주시 정안면 광정장터길 16	정 안 면
공주시 우성보건지소	공주시 우성면 동대3길 11	우 성 면
공주시 사곡보건지소	공주시 사곡면 호계장터2길 9-1	사 곡 면
공주시 신평보건지소	공주시 신평면 신평길 81-11	신 풍 면
구계 보건진료소	공주시 유구읍 양지뜸길 7	구계리, 연종리, 세동리, 동해리
추계 보건진료소	공주시 유구읍 금계산로 883	추계1·2리, 덕곡리, 문금리, 탑곡리
신흥 보건진료소	공주시 이인면 숭선군로 247-2	신흥1·2리, 오룡리, 초봉리, 주 봉1·2리, 민수리, 운암리
대학 보건진료소	공주시 탄천면 임천고개로 16	대학1·2리, 운곡리, 견동리, 국동리, 유하리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덕지 보건진료소	공주시 탄천면 하효동길 64-6	안영리, 덕지리, 화정리, 남산리
화현 보건진료소	공주시 계룡면 영규대사로 104	화현리, 경천리, 금대리, 상성리, 월곡리, 죽곡리, 향지리
왕흥 보건진료소	공주시 계룡면 왕흥장악로 395	구왕리, 내흥리
양화 보건진료소	공주시 계룡면 신원사로 410	양화1·2리
마암 보건진료소	공주시 반포면 마암길 29	마암리
상신 보건진료소	공주시 반포면 도예촌길 6	상신리, 하신리, 온천1·2리
석장리 보건진료소	공주시 석장리길 88-35	석장리동, 무릉동
문천 보건진료소	공주시 정안면 정안마곡사로 622	문천리, 내문리, 산성리, 월산리
장원 보건진료소	공주시 정안면 구억말길 15-2	장원1·2리, 운궁리, 고성리, 쌍달리
모란 보건진료소	공주시 정안면 달성길 75	상용리, 화봉1·2리, 전평리, 북계1·2리, 평정1·2리, 의당면 오인리
용봉 보건진료소	공주시 우성면 신영골길 1-6	용봉리, 죽당리, 안양리, 오동리, 봉현리, 보흥리, 어천리, 방흥리
운암 보건진료소	공주시 사곡면 정안마곡사로 1762	운암리, 회학리, 가교리, 월가리, 유룡리, 부곡리
대룡 보건진료소	공주시 신평면 새우재길 51	대룡리, 입동리, 용수리, 청흥리, 봉갑리, 조평리, 쌍대리
평소 보건진료소	공주시 신평면 평화길 152	평소리, 영정리, 선학리, 화흥리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제16조제2항 관련)

사업소명	위 치
문화시설사업소	공주시 고마나루길 1(웅진동)
복지시설사업소	공주시 의당면 의당로 257
시립도서관	공주시 고마나루길 17(웅진동)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일반직	별정직 · 정무직
비 율	99% 이상	1% 이내

(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 · 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 · 면 ·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4]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제24조제2항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 문 경력관
비 율	1% 이내	7% 이내	28% 이내	32% 이내	24% 이내	8% 이상	0%

다만, 보건진료직렬 6급 17명 중 16명은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
직전환 운영지침」에 따라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
는 것으로 본다.

2. 연구직 · 지도직 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 이내	97% 이상	10% 이내	90% 이상

3. 별정직 공무원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0%	30% 이내	70% 이내	0% 이내	0% 이상

(비고)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5]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제25조 관련)

직 급 별 \ 기 관 별	총 계	본 청	의 사 무 회 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998	-				
정 무 직 계	1	1				
시 장	1	1				
일 반 직 계	960	-				
3 급	1	1				
4 급	5	3	1	1		
5 급	52	26	2	5	3	16
6 급 이 하	902	-				
별 정 직 계	2					
6급상당 이하	2					
연 구 직 계	5	-				
연 구 관						
연 구 사	5	-				
지 도 직 계	30	-				
지 도 관	3			3		
지 도 사	27	-				

[별표 6]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 (제25조제2항 관련)

관 리 기 관 별	소속부서	구 분		정 원	운용시한	비 고
		직종	직급			
본 청	성장전략사업단	일반직	4급	1	2016년 12월 31일까지	단장
	기 획 담 당 관	일반직	6급	1	2015년 6월 30일까지	규제 개혁

공주시의회 제17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4. 11. 25)
에서 의결된 공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
한 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인

2014년 12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957호

공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공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 제17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4. 11. 25)
에서 의결된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
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인

2014년 12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958호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
법」 제2조에 따라서 공주시민의 사회복지증진을 위해서 공주시사회복
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기초생활보장계정 등 각 계정”을 “기초생활보장계

정,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여성복지계정” 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 을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시” 를 “공주시(이하 “시” 라 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주시 사회복지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에 수입금

제5조의 제목 “(기금의 관리·운용)” 을 “(기금의 설치·운용)”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시민의 사회복지 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해서 공주시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 한다.

②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 관리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탁하여야 하며, 제4조의 사업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운용한다.

③ 기금은 계정별로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해당년도 이자 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기금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수입금의 일정부분을 기금으로 재적립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사업은 적립기금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운용기금으로

전환 활용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기금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시민국장으로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사회과장, 복지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문성 및 지역 대표성,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기초생활보장·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복지 각각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사회복지기금 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를 불가피하게 개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를 준용하여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는 위원회로 본다.

제7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기금운용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운용에 따른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제9조를 삭제하고, 제8조를 제9조로 하며,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위촉해제)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시장은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제11조를 삭제하고, 제10조를 제11조로 하며,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서 기금 업무담당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각 기금계정별 업무담당을 기금출납원으로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0조에 따

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문서를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의 제목 “(실비변상)” 을 “(준용)”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② 기금의 회계관리에 대해서는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실비변상)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인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주시 조례 제608호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 부칙 제2조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기금의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운용되고 있는 사

회복지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공주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제2항 따른 사회복지기금운영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 을 “공주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의 심의사항 ” 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복지지원과 여성·노인·장애인 복지사업, 기초생활보장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주시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라서 공주시민의 사회복지증진을 위해서 공주시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기금”이라 함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설치하는 기초생활보장계정 등 각 계정의 통합기금을 말한다. 2. ~ 4. (생략)	제2조(정의) ----- -----. 1. ----- ----- ---- 기초생활보장계정,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여성복지계정-. 2. ~ 4. (현행과 같음)
제3조(기금구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u>시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u> 2. (생략) 3. <u>각 계정별 자금운용 수익금</u>	제3조(기금구성) <u>공주시 사회복지기금</u> -----. 1. <u>공주시(이하 “시”라 한다)-</u> - 2. (현행과 같음) 3. <u>공주시 사회복지기금의 운용</u>

4. 기타 수입금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되 여유자금에 대하여는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탁하여야 하며, 제4조의 용도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계정별로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당해년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기금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수입금의 일정부분을 기금으로 재적립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사업은 적립기금의 50%범위 내에서 운용기금으로 전환 활용할 수 있다.

③ (생략)

<신설>

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에 수입금

제5조(기금의 설치·운용)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사회복지 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해서 공주시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탁하여야 하며, 제4조의 사업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운용한다.

기금은 계정별로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해당년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기금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수입금의 일정부분을 기금으로 재적립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사업은 적립기금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운용기금으로 전환 활용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

제6조(기금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사회복지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민국장이 되며, 위원은 사회과장, 복지과장, 노인·여성·장애인, 기타 주민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 한다.

3.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각 계정별 담당주사로 한다.

② 위원회는 공주시지역사회복

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

지협의체로 대체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시민국장
으로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
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
직 위원은 사회과장, 복지과장
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문성 및
지역 대표성, 성별 등을 고려하
여 시장이 위촉한다.

1. 기초생활보장·노인·여성·
장애인 등 사회복지 각각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사람

2. 그 밖에 사회복지기금 운용
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
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
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
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를 불가피하게 개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주시지
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
한 조례」 제2조를 준용하여 공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
금의 조성·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략)

<신설>

2. (생략)

3. 기타 기금운용에 따른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4. (생략)

<신설>

<신설>

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주
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
회로 본다.

제7조(위원회 기능) -----

-----.

1. (현행과 같음)

2. 기금운용 계획 수립 및 변경
에 관한 사항

3. (현행 제2호와 같음)

<삭제>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기금운용에 따른 주
요사업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위촉
해제)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심
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

제8조 (생 략)

제9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
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
여 기금운용관(000과사회복지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000
계정사회복지기금출납원)을 둔
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담당부서
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각
계정별 담당주사로 한다.

<신 설>

제10조 (생 략)

제11조(준용)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

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시
장은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삭 제>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
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서 기금 업무담당국장을 기금운
용관으로 하고, 각 기금계정별
업무담당을 기금출납원으로 둔
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0
조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문서를 보
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삭 제>

니한 사항은 「공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다. ②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실비변상)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인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13조 (생 략)	제12조(준용)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기금의 회계관리에 대해서는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실비변상)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인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	--

공주시의회 제17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4. 11. 25)
에서 의결된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
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인

2014년 12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959호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6조, 제15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시장은 제19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권자” 라 한다)이 시설 사용을 중단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남은기간의 사용료를 별표 5에 따라서 반환하여야 한다. 다

만, 수목장과 잔디장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2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 을 “화장을 하는 경우에 제2항” 으로, “각 호” 를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봉안을 하는 경우에 제2항에 따른 관내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화장유골 :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을 포함한다)거주 하였거나 사망일 기준 부모, 배우자, 자녀 중 관내에서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2. 개장유골 : 개장신고일 현재 기존 묘지의 소재지가 관내일 경우
3. 봉안유골 : 사망당시 공부상 관내 거주사실을 증명하거나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중에서 봉안신청일 기준, 관내에서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4. 가족, 종중, 문중 : 봉안하고자 하는 최상위 또는 차상위 선대의 묘지가 관내에 소재한 경우

별표 4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반환금의 적용례)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의 사용료 반환금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봉안을 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시설·방안시설 설치기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제18조제1 항 및 별표 3에서 “그밖에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란 방안시설 방안시설 설치예정 지가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따라 능선 등으로 차폐되고 도로·하 천·주택가 등에서 떨어져 있어 서 주변상황에 지장이 없다고 시 장이 인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삭 제>
제6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 “봉 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 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고시한 자연 재해위험지역 2. 최근 5년 이내에 산사태·침 수 등의 재해가 발생되었던 지 역으로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마 련되지 아니한 지역	<삭 제>

3. 장사시설 설치예정부지의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급경사지역
4. 하천, 제방 등의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

제15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제20조(사용료) ①~② (생략)

③ 제19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권자”라 한다)이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남은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권자가 공설장사시설에 화장, 봉안 또는 매장 전에 사용권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이미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관내지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삭 제>

제20조(사용료) ①~②(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9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권자”라 한다)이 시설 사용을 중단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남은기간의 사용료를 별표5에 따라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수목장과 잔디장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④ 화장을 하는 경우에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

1. ~ 3. (생 략)

4. 불안유골 : 사망당시 공부상

관내 거주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신 설>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⑤ 불안을 하는 경우에 제2항에
따른 관내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화장유골 : 사망일 현재 관내
에 주민등록을 두고(외국인등
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을 포
함한다)거주 하였거나 사망일
기준 부모, 배우자, 자녀 중 관
내에서 1년이상 거주하고 있
는 사람이 있는 경우

2. 개장유골 : 개장신고일 현재
기존 묘지의 소재지가 관내일
경우

3. 불안유골 : 사망당시 공부상
관내 거주사실을 증명하거나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중에서 불안신청일 기준, 관내
에서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4. 가족, 종중, 문중 : 불안하고
자 하는 최상위 또는 차상위
선대의 묘지가 관내에 소재한
경우

[별표 4] <개정 2014. 12. 15.>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제20조제1항 관련)

(단위: 원)

시 설 별		구 분	사 용 료	
			관내지역	관외지역
화장시설		만 15세 이상(1구)	100,000	500,000
		만 15세 미만(1구)	80,000	450,000
		개장 유골(1구)	80,000	200,000
		죽은 태아(1구)	50,000	100,000
봉안시설		일반(1위, 15년)	500,000	1,000,000
		부부(2위, 15년)	1,000,000	2,000,000
		가족, 종중, 문중 (1위, 15년)	500,000	1,000,000
		무연 유골(1위, 10년)	100,000	사용제한
자연 장지	수목장	1위(15년)	300,000	500,000
	잔디장	1위(15년)	300,000	500,000
유택동산		1위	10,000	10,000
		죽은 태아	5,000	5,000

※ 비고

- 가족, 종중, 문중에 대한 봉안의 경우에는 최소 8위 단위로 계약
- 관내지역 :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공주시 지역
- 관외지역 :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공주시 외의 지역

[별표 5] <개정 2014. 12. 15.>

보안당 · 보안담 사용료 반환기준 (제20조 제3항 관련)

단계별	사용기간	환급률(%)
1	6개월 이내	70
2	6개월초과 1년미만	65
3	1년초과 2년미만	60
4	2년초과 3년미만	55
5	3년초과 4년미만	50
6	4년초과 5년미만	45
7	5년초과 6년미만	40
8	6년초과 7년미만	35
9	7년초과 8년미만	30
10	8년초과 9년미만	25
11	9년초과 10년미만	20
12	10년초과 11년미만	15
13	11년초과 12년미만	10
14	12년초과 13년미만	7
15	13년초과 14년미만	3
16	14년초과	0

공주시의회 제17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4. 11. 25)
에서 의결된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인

2014년 12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960호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제5조제2항제1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제3
항”으로 한다.

제20조의2 및 제2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 등 할 수 있는 경우) ①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3항제8호, 제19호 및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할 수 있다.

1. 시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나 법인이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2. 「공주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라서 시장 사용료가 정해진 재래 시장의 장옥을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로 재래시장 활성화 및 지역 내 상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사용 등 이미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적법하게 전대 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

나. 기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가 없거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을 포기하는 경우로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업용 영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 (허가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추천한다. 다만, 장옥이 소재한 지역주민을 우선하고, 장옥 소재 지역외의 자가 복수로 신청하는 경우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우선한다.)

제22조의2(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 재산의 표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결산, 사업실적등)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그 밖에 관리·운영 능력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여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 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제27조제3호 중 “아파트형공장으로”를 “지식산업센터로”로 한다

제28조제3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천분의 20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라서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28조제4항제3호 중 “설치자가” 를 “설치자에게” 로 한다.

제32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17조제6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영 제35조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연간 대부료 등이 200만원 초과: 100분의 30

2. 연간 대부료 등이 100만원 초과: 100분의 25

④ 영 제17조제5항에 따라 시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나 법인이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에 100분의 30을 감경 할 수 있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대부료 등의 조정)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에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에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3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부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를 “기간으로” 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영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제38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를 “기간으로” 로, “다음 각 호와” 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 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 제3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의 남은 금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

제38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11조의3제1항 또는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교환차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제38조제1

항제1호 및 제2호 또는 제3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매각대금”은 “교환차금”으로, “매각”은 “교환”으로 본다.

② 제1항 및 영 제11조의3제2항 또는 영 제45조제2항에 따라 교환차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한다.

제3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제4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일단의 토지 면적이 시지역(동지역)에서는 1,500제곱미터이하, 읍·면 지역에서는 3,000제곱미터 이하로써 2003년12월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 기간을 말함, 법률 제7698호, 2005.1.18.)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500제곱미터 또는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정하여 위 매각범위에서 분할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 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써 매수자 외의 접한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으며,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 범위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위 호에 따라 최대 분할하여 매각할 수 있는 면적은 동 지역은 500제곱미터 읍·면 지역은 1,000제곱미터 이내로 한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에 남은 금액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 중인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과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공유재산심의회 업무)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삭제) 3. ~ 5. (생략)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 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 행령」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 4. (생략) <u><신설></u>	제5조(공유재산심의회 업무) ① - ----- -----. 1. (현행과 같음) 2. <u>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 에 관한 사항</u> 3. ~ 5. (현행과 같음) ② ----- ----- ----- -----.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 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u>제7조제3항</u> ---- 2. ~ 4. (현행과 같음) <u>제20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수 익허가 등 할 수 있는 경우) ①</u> <u>행정재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u> <u>제13조제3항제8호, 제19호 및 제</u> <u>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수의계</u> <u>약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u> <u>부계약을 할 수 있다.</u>

1. 시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
제품 등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나 법인이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2. 「공주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에 따라서 시장 사용료가 정해진
재래시장의 장옥을 사용·수익
허가 하는 경우로 재래시장 활성화
및 지역내 상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사용
등 이미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적법하게 전대 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사용·수익
허가 하는 경우

나. 기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가 없거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을
포기하는 경우로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
수익허가 하는 경우 (허가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추천
한다. 다만, 장옥이 소재한

<신 설>

지역주민을 우선하고, 장유 소재 지역외의 자가 복수로 신청하는 경우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우선한다.)

제22조의2(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 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 재산의 표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결산, 사업실적등)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 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그 밖에 관리·운영 능력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 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여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
부·매각 대상 등) 제26조의 규
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
항제7호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등” 이라한다)에 대
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
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
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 6. (생 략)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
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
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
다.

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

여부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
부·매각 대상 등) -----

-----.

1.·2. (현행과 같음)

3. -----

-----지식산업센터로-----

4. ~ 6. (현행과 같음)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2. (생략)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 2. (생략)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 7. (생략)

<신설>

1. · 2. (현행과 같음)

<삭제>

④ -----

--.

1. · 2. (현행과 같음)

3. -----

---설치자에게 -----

4. ~ 7. (현행과 같음)

⑤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천분의 20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라서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② (생략)

<신설>

<신설>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에 사용료 또는 대부

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17조제6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영 제35조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연간 대부료 등이 200만원 초과: 100분의 30

2. 연간 대부료 등이 100만원 초과: 100분의 25

④ 영 제17조제5항에 따라 시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나 법인이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에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제34조(대부료 등의 조정)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에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
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
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
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
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
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
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
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
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
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파
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
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
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
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
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

5. 영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삭 제>

③ -----

기간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

1. ~ 3. (현행과 같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
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
산업센터용지, -----

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
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
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
에게 매각하는 경우

5. (생 략)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
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
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영 제39조제2항 제1호 부터
제4호 및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
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
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5.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제3항 및 영 제39조제
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 납
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
의 남은 금액에 연 3퍼센트의 이
자를 붙여야 한다.

<삭 제>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11조의3제1항 또는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교환차
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
2호 또는 제3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매

	각대금”은 “교환차금”으로, “매각”은 “교환”으로 본다. ② 제1항 및 영 제11조의3제2항 또는 영 제45조제2항에 따라 교 환차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한 다.
제39조(조성원가 매각) 「공유재 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2 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 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 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 함한다)로 한다. 1. (생략)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 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 트형 공장 내의 재산 3. 4. (생략)	제39조(조성원가 매각) ----- ----- ----- ----- -----. 1. (현행과 같음)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 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 산업센터 내의 재산 3. 4. (현행과 같음)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 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 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 ----- ----- -----.

1. ~ 3. (생략)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지역(동지역)에서는 1,500제곱미터 이하, 읍·면 지역에서는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500제곱미터 또는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 내에서 분할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접한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다.(위 호에

1. ~ 3. (현행과 같음)

4. 일단의 토지 면적이 시지역(동지역)에서는 1,500제곱미터 이하, 읍·면지역에서는 3,000제곱미터 이하로써 2003년12월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 기간을 말함, 법률 제7698호, 2005.11.8.)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500제곱미터 또는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정하여 위 매각 범위에서 분할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 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

<u>따라 최대 분할하여 매각할 수 있는 면적은 동 지역은 500제곱미터 읍·면 지역은 1,000제곱미터 이내로 한정)</u> <u><전문 개정></u>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u><후단 신설></u> 1. ~ 4. (생략) ② (생략) <u><신설></u>	<u>써 매수자 외의 접한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으며,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 범위에서 일괄 매각할 수 있다.(위 호에 따라 최대 분할하여 매각할 수 있는 면적은 동 지역은 500제곱미터 읍·면 지역은 1,000제곱미터 이내로 한정)</u>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 ----- ----- ----- . <u>이 경우에 남은 금액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한다.</u>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u>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한다.</u>
--	--

공주시의회 제17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4. 11. 25)
에서 의결된 공주시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금지조례 폐
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인

2014년 12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961호

공주시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금지조례 폐지조례

공주시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금지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 제17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4. 11. 25)
에서 의결된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인

2014년 12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962호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 제목 “기업유치심의위원회 및 기업유치활동위원회”를 “기
업투자유치 촉진위원회”로 한다.

제4조 중 “공주시 기업유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와
공주시기업유치활동위원회(이하 “활동위원회”라 한다)”를 “시 본청
에는 공주시 기업투자유치촉진위원회(이하 “시 위원회”라 한다)를 두

고, 읍·면·동에는 별도의 기업투자유치촉진위원회(이하 “읍·면·동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기업유치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기업투자유치촉진위원회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 한다.

② 시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안전산업국장, 기업경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전문성 및 지역 대표성, 성별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시의원
2.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기업 대표 및 기관단체의 임원
4. 그 밖에 지역경제 및 개발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기관단체 임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유치기본계획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정책 자문

2. 기업 및 관련기관의 단체 방문을 통한 유치 활동
3. 국내외 투자기업 및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심의
4. 기타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그 의장”을 “의장”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심의위원회의”를 “시 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는”을 “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로, “기업유치담당주사로”를 “기업유치업무담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심의위원회의 위원중”을 “시 위원회의 위원 중”으로, “위원에 대하여는 「공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위원에게는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6조는 삭제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기업유치 심의”를 “시 기업투자유치촉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항제1호의 지원대상의 보조금(입지보조금·투자보조금 총액)은 150억원까지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및 충청남도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은 시비로 부담한다.
4.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보조금(입지보조금·투자보조금 총액)

은 50억원까지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의2제1항제3호 중 “범위 내” 를 “범위” 로 한다.

제7조의4제1항 중 “범위 안에서 입지보조금·투자보조금·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을 “범위에서 입지보조금·투자보조금”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의 지원대상에 대한 보조금(입지보조금·투자보조금 총액) 은 150억원까지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충청남도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은 시비로 부담한다.

제8조제1항 중 “범위 안에서 입지보조금·투자보조금·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을 “범위에서 입지보조금·투자보조금”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공장” 을 “시 기업투자유치촉진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공장.” 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투자금액이 5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 또는 고용인원이 25명이상 50명 미만인 공장은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등에 대해서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을 시비로 지원 할 수 있다.

제18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설정, 보증보험증권, 가등기 등 채권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보증보험증권을 설정할 경우에 보험가액은 기업의 투자이행 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 할 수 있다.

④ 보조금 지원 중 국비가 지원되는 경우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의하고, 지방비로 도비가 지원되는 경우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따르며, 시비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⑤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제19조의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하며 기업이 이행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⑥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4조에 따라 지방 투자기업 관리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계획 이행상황 등을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를 제19조의2로 하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보조금 수혜 기업의 의무)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투자기간 이내에 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력 충원을 완료하여야 하며, 투자가 완

료된 경우 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을 투자계획서상의 투자완료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사후관리를 위해 실사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중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 을 “대해서 예산의 범위” 로 한다.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제23조 및 제24조로 하고,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기업유치촉진본부 설치) ① 시장은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주시 기업유치촉진본부(이하 “촉진본부” 라 한다)를 설치 할수 있다.

② 촉진본부는 부시장이 본부장이 되고 기업 유치 및 인·허가 관계공
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촉진본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권기업 투자정보 파악 및 투자유치 활동
2. 기업유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사항 처리 지원
3. 그밖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장 <u>기업유치심의위원회 및 기업유치활동위원회</u>	제2장 <u>기업투자유치 촉진위원회</u>
제4조(설치) 국내·외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유치기업의 공정한 평가와 지원을 위하여 <u>공주시 기업유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와 공주시 기업유치활동위원회(이하 “활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제4조(설치) ----- ----- ----- <u>시 본청에는 공주시 기업투자유치촉진위원회(이하 “시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읍·면·동에는 별도의 기업투자유치촉진위원회(이하 “읍·면·동 위원회”</u>
제5조(기업유치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u>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제5조(기업투자유치촉진위원회 구성 등) ① <u>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 한다.</u>
② <u>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신 행한다.</u>	② <u>시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안전산업국장, 기업경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u>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공주시의회 의원
2.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기업유치 관련 공무원
4. 그 밖에 지역경제 및 개발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기관단체 임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다시 뽑힌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서 시장이 위촉하며, 전문성 및 지역 대표성, 성별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시의원
2.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기업 대표 및 기관단체의 임원
4. 그 밖에 지역경제 및 개발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기관단체 임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유치기본계획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정책 자문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 기업유치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
2. 기업 및 관련 기관·단체 방문을 통한 유치활동
3. 유치기업에 대한 평가와 기반시설 지원, 포상금 지급 등 각종 지원시책의 심의
4. 기타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⑥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유치담당

2. 기업 및 관련기관의 단체 방문을 통한 유치 활동

3. 국내외 투자기업 및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심의

4. 기타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삭 제>

⑥ ----- 의장----- . 시 위원회의-----

⑦ 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기업유치업무담당

당주사로 한다.

⑧ 심의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
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공주
시각중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기업유치활동위원회 구성

등) ① 활동위원회는 시 본청에
는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며, 위원장
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
장이 그 권한을 대신 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
한다.

1. 출향인사·기업인, 정·관
계 인사, 시의회 의원

2. 기업체 대표 및 임원

3. 대학교수, 언론인, 사회봉사
단체 임원

4. 부동산 컨설팅,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토목 및 건축관련
전문가

당으로 ---.

⑧ 시 위원회의 위원 중 -----
-----위원에게는 「공주시 각
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범위

-----.

<삭 제>

<u>5. 기업유치 관련 공무원</u>	
<u>6. 그 밖에 지역경제 및 개발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u>	
<u>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다시 뽑힌 위원</u> <u>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	
<u>⑤ 활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기업 및 관계 기관·단체 방문 기업유치 홍보 및 기업정보 수집</u>	
<u>2. 시의 기업유치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 등</u>	
<u>⑥ 활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활동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유치담당으로 한다.</u>	
<u>⑦ 활동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공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u>	
제7조(지방투자기업의 투자지원)	제7조(지방투자기업의 투자지원)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2. (생 략) 3. <u>첨단업종 관련 공장 및 기업유치 심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공장</u>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u>제2항제1호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의한다.</u> 2. (생 략) 4. <u>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보조금 총액은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u> 5. <u>삭 제</u> 제7조의2(사업지원서비스업 지원) ① <u>고용효과가 큰 사업지원서비</u>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2. (현행과 같음) 3. ----- <u>시</u> <u>기업투자유치촉진</u> ----- ----- ③ ----- ----- -----. 1. <u>제2항제1호의 지원대상의 보조금(입지보조금·투자보조금 총액)은 1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및 충청남도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은 시비로 부담한다.</u> 2. (현행과 같음) 4. <u>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보조금(입지보조금·투자보조금 총액)은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u> 5. <u>삭 제</u> 제7조의2(사업지원서비스업 지원) ① -----
---	---

스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사
업지원서비스업을 시 관할구역
안에 이전 또는 신·증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
에 의거 입지보조금·투자보조
금·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
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
서 지원할 수 있다.

1.·2. (생 략)

3. 고용보조금: 신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
의 범위 내에서 초과인원 1명
당 월 50만원 이하, 사업개시
일부터 3년 이내에 신규채용
되는 인원에 대하여 지원

4. (생 략)

② (생 략)

제7조의4(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국내기업
이 대규모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내에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지보조금
·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
육훈련보조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2. (현행과 같음)

3. -----

-- 범위-----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의4(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

----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투
자보조금-----

-----.

② (생 략)

③ 제2항의 지원대상에 대한 보조금은 1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조문신설 2011.4.1.)

제8조(신규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국내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 관할구역안에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지보조금·투자보조금·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첨단업종관련 공장 및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심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공장

③ (생 략)

<신 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지원대상에 대한 보조금(입지보조금·투자보조금 총액)은 150억원까지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충청남도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은 시비로 부담한다

제8조(신규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① -----

----- 범위
에서 입지보조금·투자보조금-

-----.

2. -----
----- 시 기
업투자유치촉진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공장.

③ (현행과 같음)

④ 투자금액이 5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 또는 고용인원이 25명이상 50명 미만인 공장은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등에 대해서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을 시비로 지원 할 수 있다.

제18조(사후관리) ①·②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제18조(사후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설정, 보증보험증권, 가등기 등 채권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보증보험증권을 설정할 경우에 보험가액은 기업의 투자이행 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다.

④ 보조금 지원 중 국비가 지원되는 경우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의하고, 지방비로 도비가 지원되는 경우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따르며, 시비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⑤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제19조의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하며 기업이 이행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19조 (생 략)

제20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⑥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
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4조에
따라 지방 투자기업 관리에 따
라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계획
이행상황 등을 점검·확인하여
야 한다.

제19조(보조금 수혜 기업의 의무)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투자기간 이내에 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력 충원을 완료하
여야 하며, 투자가 완료된 경우
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을 투
자계획서상의 투자완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정산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사후관리를 위해 실사 또는 자
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의2 (현행 제19조와 같음)

제20조(포상금 지급) ① -----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기업,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략) <u><신설></u> 제22조·제23조 (생략)	----- ----- 대해서 예산의 범위----- -----.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기업유치촉진본부 설치) ① 시장은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주시 기업유치촉진본부(이하 “촉진본부”라 한다)를 설치 할수 있다. ② 촉진본부는 부시장이 본부장이 되고 기업 유치 및 인·허가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촉진본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권기업 투자정보 파악 및 투자유치 활동 2. 기업유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사항 처리 지원 3. 그밖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제24조 (현행 제22조 및 제23조와 같음)
---	--

공주시의회 제17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4. 11. 25)
에서 의결된 공주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인

2014년 12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963호

공주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주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 관한조례”를 “공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점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

공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점용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금액)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점용료의 납부 방법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점용료는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연액으로 한꺼번에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점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의2(점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전시·체육행사 등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환급 등) 시장은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되돌려 줄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점용료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42조 및 제43조를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하거나 징수한 경우는 이 조례에 따라 부과하거나 징수한 것으로 본다.

[별표]

점용료 산출기준 요율표

구 분	산 정 방 법
1. 전기통신비 및 전선로와 이들의 지지물에 유사한공작물과 기타 국방부장관이 작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	점용면적에 해당토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전주인 경우 1주당 단주인때에는 550원, H주인때에는 800원으로 철탑인 때에는 1,000원으로 하며 지하의 경우에는 점용면적에 해당토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정한다.
2. 수도관 • 하수도관 • 가스관 • 가스정압시설 • 열수송관 및 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의 설치	점용면적에 해당토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정한다.
3. 도로 • 교량 • 철도 및 궤도 • 노외주차장 • 선착장의 설치	점용면적에 해당토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8을 곱하여 산정한다.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 (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점용면적에 해당토지 공시지가의 1,0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공용 공고의 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0분의 25를 곱하여 산정한다.
5. 경찰관 파출소 • 초소 • 등대 및 항로표지 등의 표지의 설치	점용면적에 해당토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8을 곱하여 산정한다.
6. 방화용 저수조 • 지하대피시설의 설치	점용면적에 해당토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8을 곱하여 산정한다.
7.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가공공작물 및 경기, 집회, 전시회, 박람회를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가설 공작물	점용면적에 해당토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8을 곱하여 산정한다.

구 분	산 정 방 법
8.기존건축물 및 기존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	점용면적에 해당토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8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주택인 경우에는 점용면적에 해당토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3을 지하도등에 첨가된 물건인 경우에는 점용면적 또는 표시된에 해당토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정한다.
9.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및 재식	점용면적에 해당토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8을 곱하여 산정한다.
10.토석채취	당해연도 당해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5를 산정한다.
11. 전 각호의 게시된 것 외에 도시공원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및 시설을 위한 설치	점용면적에 해당토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8을 곱하여 산정한다.

※ 해당토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공주시의회 제17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4. 11. 25)
에서 의결된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
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인

2014년 12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964호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국토교통부장관, 충청남도지사”를 “충청남도지사”로,
“도시관리”를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은 「지방재정법」,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공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를 “사
항은 「지방재정법」,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공주시 도로점

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등” 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영 제41조제5항에 따르고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근·철골콘크리트조가 아닌 것으로 하며, 공작물은 높이가 지상으로부터 10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제13조 중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위원회의 공동심의” 를 “협의 및 공동위원회의 심의” 로 한다.

제16조 중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 를 “허가” 로, “다음” 을 “영 제53조” 로 한다.

제17조 중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을 “시장은” 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요건을 모두” 를 “요건을” 로, “한정” 을 “대”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구성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를 “구성과 표고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상지의 경사도는 「산지관리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평

균경사도가 20° 이하여야 한다. 다만, 20° 이상인 경우에는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23조 본문 중 “분할제한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분할제한면적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별표2와”를 “별표 1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4호 중 “차목·타목 및 파목의”를 “거목·더목 및 안마시술소”로 한다.

제29조 중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서”를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서”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별표 3부터 별표 25까지의 규정에”를 “법 제76조에 따라”로, “자연취락지구”를 “자연취락지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0조제1호 중 “별표 3과”를 “별표 2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별표 4와”를 “별표 3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별표 5”를 “별표 4”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별표 6과”를 “별표 5와”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별표 7”을 “별표 6”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별표 8” 을 “별표 7” 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별표 9와” 를 “별표 8과” 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별표 10과” 를 “별표 9와” 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별표 11” 를 “별표 10” 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별표 12와” 를 “별표 11과” 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별표 13과” 를 “별표 12와” 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별표 14와” 를 “별표 13과” 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별표 15” 를 “별표 14” 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별표 16과” 를 “별표 15와” 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 중 “별표 17” 을 “별표 16”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 중 “별표 18” 을 “별표 17” 로 하며, 같은 조 제17호 중 “별표 19와” 를 “별표 18과” 로 하고, 같은 조 제18호 중 “별표 20” 을 “별표 19” 로 하며, 같은 조 제19호 중 “별표 21” 을 “별표 20”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0호 중 “별표 22” 를 “별표 21” 로 하며, 같은 조 제21호 중 “별표 23” 을 “별표 22” 로 하고, 같은 조 제22호 중 “별표 24” 를 “별표 23”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3호 중 “별표 25” 를 “별표 24” 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미관도로(주 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 을 “도로변” 으로, “너비 2미터” 를 “높이 2미터, 너비 1미터” 로 한다.

제37조 중 “경우「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를 “경우「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으로” 로 한다.

제39조제4호 중 “병원 및 장례식장” 을 “병원”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40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41조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 및” 을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의 설치에 대하여” 로 한다.

제4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건축물 : 50퍼센트이하

제43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제44조 중 “해당” 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으로 한다.

제4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은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2조 중 “도시계획” 을 “도시관리계획” 으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기능)” 을 “(업무)”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능은” 을 “업무는” 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을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제53조제4호 중 “도시계획” 을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조례의 제정,개정 등” 으로, “회의에 부친” 을 “자문에 응하는” 으로, “자문” 을 “조언” 으로 한다.

제54조제2항 중 “선출한다” 를 “호선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별표 26” 을 “별표 25” 로 한다.

제5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분과(전체)위원회

제59조제1항제1호가목 중 “등의 변경계획” 을 “등 도시관리계획” 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법 및 「도시개발법」, 「도시환경 정비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도록 규정된 사항

다. 기타 다른 위원회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에 관한 사항

제59조제1항제3호가목 중 “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를 “공동위원회의 구성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구성하며”를 “하며”로, “건축위원회 위원이”를 “건축위원회 위원은”으로, “이상이어야 한다”를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다른 법률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라.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별표 1부터 별표 25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개발 행위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별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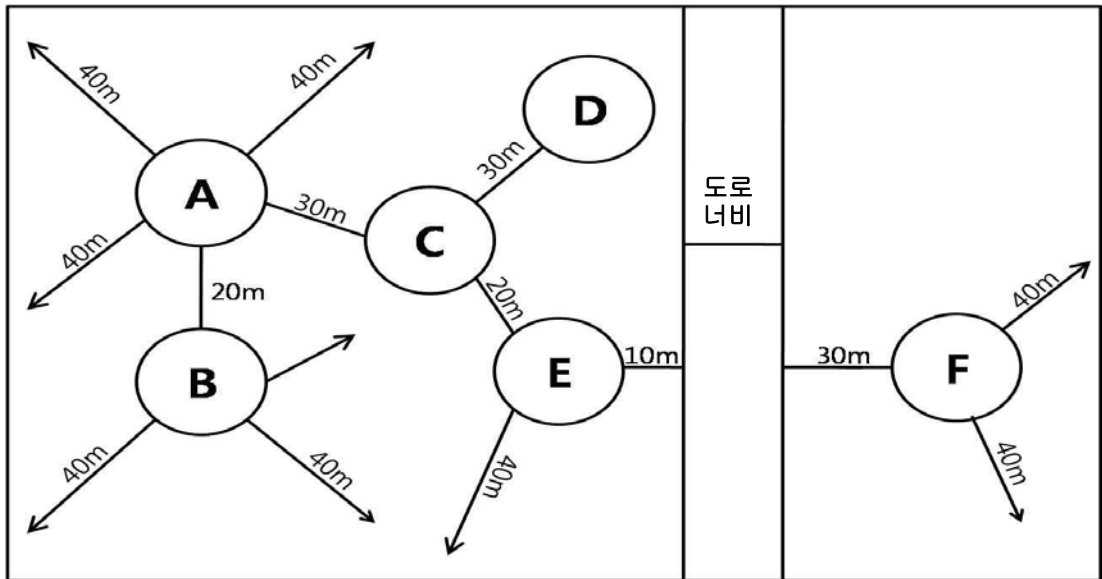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 기준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 및 제26조제1항관련)

용도 지역	건축물의 용도	거리	기존 개발행위 전체면적	기반시설 등 기타
계획관리 지역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	40m 이내	30,000㎡ 이상	가. 건축물의 진입도로 -건축법에 기준에 따름 나. 상·하수도시설이 적정할 것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 (농업·임업·축산업· 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같은 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40m 이내	30,000㎡ 이상	가. 건축물의 진입도로 -건축법에 기준에 따름 나. 상·하수도시설이 적정할 것
자연녹지 지역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	40m 이내	10,000 ㎡이상	가. 건축물의 진입도로 -건축법에 기준에 따름 나. 상·하수도시설이 적정할 것

* 거리산정에 있어 도로의 너비는 제외한다.

*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는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 한한다.



<집단화 유도 예시 그림>

* 그림설명: 기준을 기존 개발전체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거리 40m 이내로 정한 경우

- 공장 A부터 F까지 부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은 집단화 유도지역이 되고, 공장 A부터 F까지 어느 공장이든 그 공장 부지에서 40m이내거리에는 연접제한을 받지 않고 공장 등을 건축 가능하고, 공장을 신축하면 그 공장으로부터 다시 40m 이내 거리에는 계속 신축 가능
- 기존 개발행위면적(공장 등)이 없는 지역에 신규로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 하나의 개발행위규모가 용도지역별 개발행위 허가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시행령 제55조제3항제3의2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가능)
- 기존 개발행위면적(공장 등)이 없는 지역에 3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시행령 제55조제3항제3의2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건축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주변은 집단화유도지역이 됨

[별표 2]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제1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 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3]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2호 및 제30조제2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4]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3호 및 제30조제3호관련)

4층 이하(「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 시설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바.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4호 및 제30조제4호관련)

18층 이하(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지구단위계획 등 별도의 계획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최고 층수는 24층 이하로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로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 시설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8. 별표 4 제9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5호 및 제30조제5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 하는 것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8. 별표 4 제9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7]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6호 및 제30조제6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설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건축물 및 공작물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거리(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상,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동호 다목, 마목, 아목, 자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검사장, 정비공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8]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7호 및 제30조제7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건축물 및 공작물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거리(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상,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건축물 및 공작물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거리(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상,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9]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71조제1항제8호 및 제30조제8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건축물 및 공작물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차단되거나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상,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건축물 및 공작물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차단되거나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상,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동호 다목, 마목, 아목, 자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10]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9호 및 제30조제9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건축물 및 공작물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차단되거나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상,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건축물 및 공작물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차단되거나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상,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동호 다목, 마목, 아목, 자목에 해당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0호 및 제30조제10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건축물 및 공작물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차단되거나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상,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건축물 및 공작물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차단되거나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상,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동호 다목, 마목, 아목, 자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2]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1호 및 제30조제11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동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3] <개정 2014.3.24>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2호 및 제30조제12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목부터 라목은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4]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3호 및 제30조제13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15]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4호 및 제30조제14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마목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5호 및 제30조제15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로 한정한다)·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

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6호 및 제30조제16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 (3)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 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

원 및 한방병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학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2호 아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공주시에서 공주시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같은 호 다목, 마목 및 자목은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별표 18]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71조제1항제17호 및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과 제30조제17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같은 호 다목, 마목 및 자목은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8호 및 제30조제18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 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 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같은 호 다목, 마목 및 자목은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 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9호 및 제30조제19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4호의 제1종, 제2종의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별표 24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안마시술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의 조성계획(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에 의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관광농원 또는 관광휴양단지에 건축하는 경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지구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지구·사업계획이 수립 고시된 지역 등은 제외]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같은 호 다목, 마목 및 자목만 해당한다)

[별표 21]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20호 및 제30조제20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2]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21호 및 제30조제21호관련)

협의권자 및 허가권자가 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내에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바
목, 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
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의 국방·군사시설 중 시장이 입지
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3]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8조 및 제30조제22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리목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9 제2호 자목 (1) 내지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가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24]

계획관리지역에서 일반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규칙 제12조 별표 2 및 제30조제23호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거나 반경 3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과 주요용도 시설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편의(부대)시설은 제외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지방하천(유구천: 금강합류지점부터 사곡면 해월리와 신평면 영정리가 만나는 지점에 한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은 제외한다)

주

- 1)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 2) "유하거리"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 3) 주택의 1호 산정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을 말하며, 같은 호 나목, 다목 및 제2호 공동주택은 세대수를 호수로 산정하고, 폐가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의 공가는 대상호수에서 제외한다.

청렴서약서(제53조제4항 관련)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공주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다음과 같이 청렴의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2개 이내로 참여하고 있으며, 공주시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5개 이내로 활동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2. 본인은 「공주시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안건에 대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공평·공정하게 심의한다.
3. 본인은 「공주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활동을 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3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심의 안건을 회피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주소(소속):

직위:

생년월일:

성명: (서명)

공주시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 ----- 충청남도지사----- ----- ----- 도시관리계획 -----.
제9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공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 ----- ----- 사항은 「지방재정법」,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공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등-----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제11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근·철골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제11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영 제41조제5항에 따르고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근·철골콘크리트조가 아닌 것으로 하며, 공작물은 높이가 지상으로부터 10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써 3층 이하
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
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써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
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하
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 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
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의 합
계가 5백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4. 공작물은 높이가 지상으로부터
10미터 이하인 것

제13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
사항)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
느 하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
부장관과의 협의, 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위원회의 공동심
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
사항) -----
----- 협의
및 공동위원회의 심의-----

-----.

제16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
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
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
다.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시장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입목의 축적 및 구성은 「산지관
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산
지전용허가 기준을 적용한다.
2. 표고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
7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적용한다.

제16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허가-----
----- 영 제5
3조 -----.

제17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
----- 요건을-----
----- 대-----.

1. ----- 구성과 표고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
2. 대상지의 경사도는 「산지관리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
한 평균경사도가 20° 이하여야
한다. 다만, 20° 이상인 경우에
는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
정하여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
가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23조(토지의 분할제한면적 등)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및 자연환
경보전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
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후단 신설
2014.7.1)

제26조(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①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른 건축
물을 집단화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
었거나 진행 · 예정된 토지의 경계
로부터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
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2와 같다.

② (생 략)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
의) ① (생 략)

② 영 제57조제1항1의2호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토지의 분할제한면적 등) --

- 분할제한면적은 60제곱미터 이
상으로 한다. -----

제26조(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① --

----- 별표 1과 --.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
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써 그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이고, 개발면적이 7천제곱미터 미만이며(자연환경보전지역은 5천제곱미터 미만), 10호 미만의 주택(공동주택은 10세대 미만)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후단 개정 2014.7.1.)

1. ~ 3. (생략)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6. (생략)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 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남도 및 공주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30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영

1. ~ 3. (현행과 같음)

4. -----
----- 거목·더목 및 안마
시술소 -----

5.·6. (현행과 같음)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 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

제30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법

11.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0.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4와 같다.
23.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11. -----
별표 12와 ---.
12. -----
별표 13과 ---.
13. -----
별표 14---.
14. -----
별표 15와 --.
15. -----
별표 16---.
16. -----
별표 17---.
17. -----
별표 18과 ---.
18. -----
별표 19--.
19. -----
별표 20---.
20. ----- 별표 21----.
21. -----
별표 22---.
22. -----
- 별표 23---.
23. -----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 별표 25와 같다.

제34조(미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생략)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 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생략)

제37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미관지구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담장, 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별표 24-----.

제34조(미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 도로변-----

높이 2미터, 너비 1미터 -----

-----.

③ (현행과 같음)

제37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

----- 경우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으로-----

-----.

제39조(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3. (생략)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요양병원·격리 병원 및 장례식장

5. ~ 14. (생략)

<신설>

제40조(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15. (생략)

<신설>

제41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

제39조(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1. ~ 3. (현행과 같음)

4. -----

----- 병원

5. ~ 14. (현행과 같음)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40조(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물) -----

-----.

1. ~ 15. (현행과 같음)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41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생략)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제43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① (생략)

②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항 신설 2014.7.1.)

1. 2. (생략)

3.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에 한한다)의 건축물 : 40퍼센트이하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

-----.

1. (현행과 같음)

2. -----
-----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의 설치에 대하여 -----
-----.

제43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① (현행과 같음)

② -----

1. 2. (현행과 같음)

3.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건축물 : 50퍼센트이하

<삭제>

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건축물 : 50퍼센트이하

5. (생 략)

제44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49조(공공시설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생 략)

②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 대한 세부적인

4. (현행 제5호와 같음)

제44조(건폐율의 강화) -----

-----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

-.

제49조(공공시설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은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항은 충청남도 공동주택건설에 관한 위원회 검토·심의 통합지침에 따른다. (후단 개정 2014.7.1.)

제52조(설치) 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5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생략)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자문

제54조(구성) ① (생략)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52조(설치) -----
도시관리계획-----
-----.

제53조(업무) ----- 업무는 -----.

1. -----

-----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2. (현행과 같음)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4. -----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조례의 제정,개정 등-- 자문에 응하는 ----- 조언

제54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호선한다.

③ (생 략)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1 ~ 2. (생 략)

3. 토지이용 · 건축 · 주택 · 교통 · 환경 · 방재 · 문화 · 농림 ·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위원으로 2개 이내로 참여하고, 시의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5개 이내로 활동하며 별표 26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사람

⑤ (생 략)

제59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분과위원회

가.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2. (현행과 같음)

3. -----

----- 별표 25 -----
-----.

⑤ (현행과 같음)

제59조(분과위원회) ① -----

-----.

1. 제1분과(전체)위원회

가. -----
등 도시관리계획 -----

나.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
항

<신 설>

2. (생 략)

3. 공동위원회

가. 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사
항과 다른 법률에서 공동위원
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와 시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추천을 받아 공동위원회를 구
성한다.

나.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
명 이내로 구성하며 제59조제1
항제1호의 제1분과위원은 공동
위원회의 위원이 되고 건축위
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어
야 한다.

나. 법 및 「도시개발법」, 「도
시환경 정비법」 등 다른 법률
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자문
을 받도록 규정된 사항

다. 기타 다른 위원회 소관에 속
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한 심
의 또는 자문에 관한 사항

2. (현행과 같음)

3. -----

가. 공동위원회의 구성은-----

-----.

나. -----
----- 하며 -----

----- 건축위원회
위원은 -----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다.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
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
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위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
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② ~ ⑤ (생략)

다. 다른 법률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라.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구역지정 및 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② ~ ⑤ (현행과 같음)

공주시의회 제17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4. 11. 25)에
서 의결된 공주시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인

2014년 12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965호

공주시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공주시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 제17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4. 11. 25)에
서 의결된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인

2014년 12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966호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7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는 주차요금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4조제1항 관련)

급지구분	1회 주차요금	기준30분 초과시 10 분마다	1시간 주차요금	1일 주차요금	월정기 주차요금	비고
1급지	500원	200원	1,000원	5,000원	40,000원	
2급지	300원	100원	-	-	-	

(비고)

1. 이 주차요금은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에 한정한다.
2. 주차장 급지는 동지역은 1급지로, 읍·면지역은 2급지로 한다.
3. 1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며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4. 주차요금의 징수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단, 일요일은 무료로 운영한다.
 - 가. 연중 (06:00 ~ 22:00)
 - 나. 6시간 이상 주차한 자동차는 1일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 다. 현지역건을 감안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징수시간 등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5. 1일 주차요금과 월 정기 주차요금은 조례 제4조제5항부터 제8호까지의 감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 ④ (생략)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경승용차(1천cc이하 미만)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는 70퍼센트 를 감면한다.	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7에 따른 저공해 자동 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는 주 차요금 50퍼센트를 감면한다.
⑥ ~ ⑧ (생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공주시의회 제17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4. 11. 25)에
서 의결된 공주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인

2014년 12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967호

공주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경 50mm이상 급수 신청자 중 원인자부담금의 분납을 원할 경
우에는 별표5의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의 승

인을 받은 후 4회의 범위에서 24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 또는 처리 중인 사항은 종전의 처리 규정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부담금의 부과 · 징수)	제6조(부담금의 부과 · 징수)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4.7.1)	⑤ ----- -----.
<단서 신설>	<u>다만 관경 50mm이상 급수 신청 자중 원인자부담금의 분납을 원할 경우 별표5의 원인자부담금 분할 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최대 4회, 24개월 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u>

[별표5]

원인자 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수 전 위 치	공주시		
급 수 구 경		공 사 구 분	신규, 개조, 임시
원인자부담금	원		

구 분	금 액	납 부 시 기	비 고
1회			
2회			
3회			
4회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연락처 :)

공주시장 귀하

공주시의회 제17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4. 11. 25)
에서 의결된 공주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인

2014년 12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968호

공주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입한 자” 를 “전입한 사람” 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공주시” 를 “공주시(이하 “시” 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공주시” 를 “시” 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출산양육지원금: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신생아 또한 시에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

제3조제1항제2호 중 “공주시에 전입하는 자”를 “시에 전입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공주시”를 “시”로, “자(단)”을 “사람(다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모 모두가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신생아와 함께 거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는 세대주로 한다.

제3조제2항 후단 중 “이”를 “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3월”을 “6개월”로, “자에 한한다)”를 “사람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출산양육지원금: 신생아가 첫째자녀인 경우 50만원, 둘째자녀인 경우 100만원, 셋째 이상의 자녀는 200만원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자녀의 수는 시에 전입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수를 적용하며, 신생아가 쌍태아 이상인 경우에는 태어난 순위에 따라 태아별로 지원한다.

제5조의 제목 “(지급방법)”을 “(지급 신청 및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는 세대주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장·면장·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시 출산양육지원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인에게 안내하고, 신고인은 신생아의 출생신고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장·면장·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장·면장·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 기간
3. 제4조의 지급기준 여부(행정정보공동이용을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④ 제3항에 따라 출산양육지원금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접수 및 지원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4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별지 제3호 서식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읍장·면장·동장이 별도로 확인 후 지급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환수 조치) ① 읍장·면장·동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양육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서 출산양육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출산양육지원금 접수 및 지원대장에 그 환수 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방법) 제4조에서 규정한 보상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구체적인 지급액과 지급방법 등은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고한다.

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양육지원금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이 출산양육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3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출산양육지원금신청서

접수번호		제 호			
대상자 (신생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별
	출생일자	년	월	일	출생장소
	자녀수	의 자녀 중		번째	
부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모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보호자(부모 이외)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아래를 작성합니다.					
보호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대상자와의 관계
	보호 사유				
	연락처	자택	휴대폰		이메일
공통사항 입금계좌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공주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산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대상자와의 관계 : 성명 : (서명)					
읍·면·동장 귀하					
지원대상여부 확 인 자	소속	직급		성명	(인)
※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주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환수조치 합니다.					
※ 붙임서류 : 통장사본 1부					

출산양육지원금 접수 및 지원 대장

일련 번호	대상자(신청자) 인적사항		신청인 성명 /대상자와 관계	주 소	전화 번호	신청일	지원일	지원 금액	예금주	비고 (환수 조치)
	성 명	생년월일								
			/							
			/							
			/							
			/							
			/							
			/							
			/							
			/							
			/							
			/							
			/							
			/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신 청 분 야	☐ 쓰레기 종량제규격봉투 ☐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비 ☐ 건강보험료 보전 ※ 해당 항목에 체크해주시요 ☐ 자동차 변경등록 경비					
신청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쓰레기봉투	매 수		수령인	(인)		
대학생생활 용품 구입비	학 교		학 과		학 년	
건강보험료 보전	학 교		학 과		학 년	
입금통장 자동차변경 등록경비	차량번호	전 후	통장번호 (금융기관)		예금주	
세 부 신 청 사 항						
「공주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산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대상자와의 관계 : 성 명 : (서명) 읍·면·동장 귀하						
지원대상여부	소 속		직 급		성명	(인)
확 인 자						
1. 첨부서류 : 통장사본(자동차변경등록신청자), ②대학생생활용품구입비는 재학증명서 2.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 지역발전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주시에서 출생한 신생아와 공주시로 <u>전입한</u> 자에 대한 보상 등 공주시의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전입한 사람</u>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비”라 함은 <u>공주시</u> 에 전입하는 관내에 소재하는 대학의 학생에게 생활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4. (생략) 5. “전입으로 소요되는 경비”라 함은 타 시·도에서 <u>공주시</u> 에 전입함으로써 소요되는 차량 이전에 관한 경비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1. · 2. (현행과 같음) 3. ----- <u>공주시(이하 “시”라 한다)</u> ----- ----- -----. 4. (현행과 같음) 5. ----- ----- <u>시</u> ----- ----- -----.
제3조(지급대상) ① 보상별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u>출산양육지원금: 부부 중 1인이 3월 이상(출산일 기준)</u>	제3조(지급대상) ① ----- -----. 1. <u>출산양육지원금: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신생아의 출생</u>

계속하여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중에 신생아를 출생하여 신고한 자 중,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공주시에 둔 경우에 한한다.

2.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공주시에 전입하는 자

3. · 4. (생략)

5. 전입으로 소요되는 경비 : 충청남도외의 타 시·도에서 공주시에 전입하여 자동차 변경등록을 하는 자(단, 전국번호판 소유자 제외)

② 미혼부·미혼모로부터의 출생 또는 신생아의 출생전 부의 사망 또는 이혼으로 부모 중 어느 한 사람만이 신생아와 함께 지급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도 출산양육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도 제1항제1호의 거주기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외국인과 혼인하여 출생한 경우도 해당된다.(이 경우 부모 중 한 사람은 반드시 3월 이상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에 한한다)

제4조(지급기준) 보상별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일 기준으로 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신생아 또한 시에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

2. -----시에 전입하는 사람

3. · 4. (현행과 같음)

5. -----
-----시-----
-----사람
(다만-----

② 부모 모두가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신생아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는 세대주로 한다. 이 -----
-----.

③ -----
-----.
-----6개월-----
----- 사람만 해당한다.

제4조(지급기준) -----
-----.

1. 출산양육지원금: 신생아가
둘째자녀인 경우 1인당 50만
원 이내, 셋째 이후 자녀는 1
인당 80만원 이내에서 지급
(자녀 1인당 1회에 한함)

2. ~ 5. (생 략)

제5조(지급방법) 제4조에서 규정
한 보상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
위안에서 지급하며, 구체적인
지급액과 지급방법 등은 공주시
홈페이지와 공주시보에 공고한
다.

<신 설>

<신 설>

1. 출산양육지원금: 신생아가
첫째자녀인 경우 50만원, 둘
째자녀인 경우 100만원, 셋째
이상의 자녀는 200만원을 지
급한다. 이 경우에 자녀의 수
는 시에 전입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 된 수를 적용하며, 신생
아가 쌍태아 이상인 경우에는
태어난 순위에 따라 태아별로
지원한다.

2. ~ 5. (현행과 같음)

제5조(지급 신청 및 절차) ① 출
산양육지원금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생
아의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
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
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는 세대주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장·면장·동장은 출생신
고서 접수시 출산양육지원금 대
상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인에게
안내하고, 신고인은 신생아의
출생신고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장·면장·동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③ 읍장·면장·동장은 신청서
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확인하여야 한다. 1. <u>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u> 2. <u>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 기간</u> 3. <u>제4조의 지급기준 여부</u>
<u><신 설></u>	④ <u>제3항에 따라 출산양육지원금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접수 및 지원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u>
<u><신 설></u>	제6조(환수 조치) ① <u>읍장·면장·동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양육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u> ② <u>제1항에 따라서 출산양육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출산양육지원금 접수 및 지원대장에 그 환수 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u>
<u><신 설></u>	제7조(지급방법) <u>제4조에서 규정한 보상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구체적인 지급액과 지급방법 등은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고한다.</u>
<u><신 설></u>	제8조(규칙) <u>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공주시의회 제17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4. 11. 25)
에서 의결된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인

2014년 12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969호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부터 별표 2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4. 12. 15>

시설사용료 (제5조제2항 관련)

1. 단체 숙박동 사용료

(단위: 1박 1실, 원)

구 분	학생단체(1실 10명 기준)	일반단체(1실 10명 기준)	
		주 중	주 말
숙박비	100,000	100,000	120,000

※비고 : 학생은 고등학생 이하를 말하며, 기준정원 초과 시 1명당 5,000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2. 개별 숙박동 사용료

(단위: 1박 1동, 원)

구 분	정 원	요 금		객실수 (방수)	비 고
		주 중	주 말		
실속형	2명	50,000	70,000	4(1)	공동욕실
초가형	3명	130,000	150,000	3(1)	온돌
전통형	3명	150,000	200,000	3(2)	온돌, 욕조
일반형	2-3명	80,000	100,000	2(1)	온돌
	3-4명	100,000	120,000		온돌, 욕조
	13-15명	200,000	250,000	1(3)	욕조
고급형	5-6명	150,000	200,000	4(2)	온돌, 욕조
양반형	4명	150,000	200,000	2(2)	온돌, 욕조
	9명	200,000	250,000	2(3)	온돌, 욕조

※ 비고 : 기준정원 초과 시 1명당 5,000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3. 다목적실 사용료

- 가. 숙박하는 자가 사용 할 경우: 무료
- 나. 숙박하지 않는 자가 사용할 경우: 2시간 기준 30,000원으로 하고,
1 시간 초과 시 마다 10,000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 다. 공주시 주최·주관일 경우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료로 할 수 있다.

4. 퇴실시간 초과 시 사용료

12:00까지 10,000원(1시간만 추가사용가능), 16:00이후 퇴실시에는 1
박 사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5. 오토캠핑장 사용료

20,000원/1일 1대

6. 야외 바비큐장 시설사용료

30,000원/1일

[별표 2] <개정 2014. 12. 15>

시설사용료 감면기준 (제6조 관련)

구 분	감 면 율	
	단 체 숙박동	개 별 숙박동
1. 공주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20퍼센트	20퍼센트
2. 수학 여행단 (기준정원 30명 이상)	20퍼센트	
3. 교육관련 단체가 학생연수, 훈련 및 수련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준정원 30명 이상)	20퍼센트	
4.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20퍼센트	20퍼센트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급 ~ 3급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20퍼센트	20퍼센트
6. 「주민등록법」에 따라 공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20퍼센트	20퍼센트
7. 「공주시 명예 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공주시 명예시민인 경우	20퍼센트	20퍼센트
8.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이버공주시민으로 가입된 사람 중 사이버 공주시민증을 제시한 경우	20퍼센트	20퍼센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주택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5일
공 주 시 장

1. 사 업 명 : 공주 신관동 효성아파트

2. 사업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350외 67필지

3. 사업주체

- 상 호 : (주)미소디엔씨 대표 김병욱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77 비-1212(정자동, 인텔리지2)

4. 용도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5. 사업계획변경 내용

○ 사업주체	기존	(주)아이미래개발 황일권	○ 대지면적	기존	17,825㎡
	변경	(주)미소디엔씨 김병욱		변경	17,708㎡
○ 건축면적	기존	3,383.1307㎡	○ 연 면 적	기존	57,591.0622㎡
	변경	3,311.7575㎡		변경	57,283.4158㎡
○ 건 폐 율	기존	18.98%	○ 용 적 율	기존	239.68%
	변경	18.70%		변경	239.57%
○ 세 대 수	기존	470세대	○ 사 업 비	기존	96,464,900천원
	변경	475세대		변경	90,133,000천원
○ 사업기간	기존	2007.02.26. ~ 2016.05.31.			
	변경	2007.02.26. ~ 2017.10.30.			
○ 비 고	기존				
	변경				

6. 의제사항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시 신축 건물 및 도로명 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해「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12. 09.

공주시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건너들길 34 (상왕동) 외 2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과(☎840-8480)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12. 0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세부내역

순번	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고시일자	도로명부여사유
1	충청남도 공주시 상흥동 479-2	충청남도 공주시 건너들길 34 (상흥동)	2014.12.09	신축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2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359-3, 361-10, 359-4	충청남도 공주시 관북2길 21 (신관동)	2014.12.09	신축	20100112	역사적특성 반영
3	충청남도 공주시 금홍동 617-12	충청남도 공주시 한적2길 37-28 (금홍동)	2014.12.09	신축	20100112	자연마을 명칭과 일련번호 방식 복합 활용
4	충청남도 공주시 금홍동 618-4	충청남도 공주시 한적2길 41-17 (금홍동)	2014.12.09	신축	20100112	자연마을 명칭과 일련번호 방식 복합 활용
5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453-10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마곡리소로 93-11	2014.12.09	신축	20100112	유구읍에서 마곡사를 활용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과 마곡사의 명칭을 활용하여 유구마곡사로 부여
6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신암리 304-3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신암산수골길 46	2014.12.09	신축	20100112	자연마을 명칭과 행정구역 명칭 복합 반영
7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맥동리 556-11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사정리길 18	2014.12.09	신축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8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맥동리 556-12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사정리길 20	2014.12.09	신축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9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불산리 151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경마위로 22	2014.12.09	신축	20100112	주방~이인 가느다란 도로 옆에 경마위라는 유적물이 있어 유물의 명칭 활용
10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안영리 338-5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탄천산영단길 55-27	2014.12.09	신축	20131023	탄천면탄산영단지 준공에 따른 도로명 부여
11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기산리 산60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단리들중대길 33	2014.12.09	신축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 활용
12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구왕리 182-4, 181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상창소길 44	2014.12.09	신축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 활용
13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양화리 344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신영사로 430-14	2014.12.09	신축	20100112	경천리에서 계룡산 신영사로 가는 길로 신영사로라 부여
14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송곡리 287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송곡로 268-9	2014.12.09	신축	20100112	송곡리를 관통하는 주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
15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424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사평길 127	2014.12.09	누락	20100112	산의 모양이 뿔의 머리와 같다 하여 뿔진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16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뿔곡리 126-4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의당초교길 92	2014.12.09	신축	20100112	의당면의 대표적인 의당초등학교를 지나는 길이라 하여 의당초교길로 부여
17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유계리 345-2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평정말길 50	2014.12.09	신축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 활용
18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176-1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이물길 104-27	2014.12.09	신축	20111219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19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내촌리 235-14, 235-6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아래양지말길 20-9	2014.12.09	신축	20100112	양지쪽에 자리하며 마을 아래에 있다 하여 아래양지말길로 부여
20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대산리 236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소행이길 36	2014.12.09	신축	20100112	이 주위에 7개 갈기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여 관마리라고 불렀는데 이름이 대산에서 소행이로 바뀌었다 하여 소행이로 부여
21	충청남도 공주시 시곡면 신영리 203-4	충청남도 공주시 시곡면 신영신말길 24-9	2014.12.09	신축	20100112	새마을 신, 평평할 평의 뜻으로 새로운 평평한 마을이라 하여 신평길로 부여 후 행정구역 명칭 첨가
22	충청남도 공주시 시곡면 신영리 14-8	충청남도 공주시 시곡면 아래안영로길 54	2014.12.09	신축	20100112	안영리 이북편에 자리하고 있다 하여 아래안영로길로 부여
23	충청남도 공주시 신흥면 백동리 21-2	충청남도 공주시 신흥면 차동로 1817-34	2014.12.09	신축	20090825	예산군과 공주시 경계에 위치한 고개 이름 사용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우리시 도로명주소 부여건물 중 도로명 주소 변경 부여 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12. 09.

공주시장

○ 도로명주소 : 충남 공주시 국고개길 6-2 외 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과(☎840-8480)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12. 0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세부내역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충청남도 공주시 중동 238-2, 239-1	충청남도 공주시 중동 238-2	충청남도 공주시 국고개길 8-2	충청남도 공주시 국고개길 6-2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중동 238-2, 239-1	충청남도 공주시 중동 239-1	충청남도 공주시 국고개길 8-2	충청남도 공주시 국고개길 8-2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중동 239-1, 239-2	충청남도 공주시 중동 239-2	충청남도 공주시 국고개길 8	충청남도 공주시 국고개길 8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충남 공주시 정안면 인풍리 208-1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인풍리 208-1, 209-9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신안동길 36-6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신안동길 36-6	2011.05.06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시 건물등의 멸실에 따라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및 제25조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12. 09.

공주시장

○ 도로명주소 : 충남 공주시 의당면 평정말길 52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과(☎840-8480)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12. 0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등에 의거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세부내역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일	폐지사유	비고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유계리 345-2, 473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평정말길 52		건물말소	

소하천(다른골천 외2개소) 정비 시행계획 변경 공고

공주시 공고 제2014-1449호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2항,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2014년도 소하천(다른골천 외2개소) 정비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께서는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아래 기간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2월 15일

공 주 시 장 (직인)



소하천 명	사 업 개 요									비 고
	공사명	공사 위치		사업량(m)			공사기간		공사 목적	
		시작하 는 지점	끝나는 지점	축제 (築堤)	호안 (護岸)	기타 (橋梁)	착공	준공		
다른골 소하천	다른골 소하천 정비사업	정안면 인풍리 203-1	정안면 인풍리 351	802	1,218	교량 6개소	2015. 01	2015. 12	소하천 재해 예방	당초
다른골 소하천	다른골 소하천 정비사업	정안면 인풍리 203-1	정안면 인풍리 351	802	1,218	교량 4개소	2014. 12	2015. 12	소하천 재해 예방	변경
굴티 소하천	굴티 소하천 정비사업	우성면 봉현리 540	우성면 봉현리 480	1,868	1,868	교량 7개소	2015. 01	2015. 12	소하천 재해 예방	당초
굴티 소하천	굴티 소하천 정비사업	우성면 봉현리 540	우성면 봉현리 480	627	1,300	교량 4개소	2014. 09	2015. 09	소하천 재해 예방	변경
황새 나무골 소하천	황새나무골 소하천 정비사업	계룡면 내흥리 530-1	계룡면 내흥리 455-3	750	750	교량 4개소	2015. 01	2015. 12	소하천 재해 예방	당초
황새 나무골 소하천	황새나무골 소하천 정비사업	계룡면 내흥리 530-1	계룡면 내흥리 455-3	750	750	교량 3개소	2014. 09	2015. 09	소하천 재해 예방	변경

☞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4. 12. 15. ~ 2014. 12. 29.(15일간)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공주시청 안전관리과 하천관리담당(☎041-840-8668)
정안면, 우성면, 계룡면 산업개발담당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1식

- 다른골 소하천 정비사업 세부 정비시행계획 -

1. 소하천 정비공사의 명칭

- 다른골 소하천 정비사업

2. 소하천 정비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본 사업은 공주시 정안면 인풍리에 위치한 다른골 소하천 정비를 통하여 집중 호우, 우기시 원활한 유수의 흐름을 유도하여 하천 유역의 영농편익과 농지 및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사업의 개요

- 사업량 : 축제 및 호안 L=1,218m, 교량4개소
- 사업비 : 2,955백만원
-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인풍리 203-1번지~351번지 일원

3. 소하천 정비공사를 시행하는 자의 명칭 및 주소

- 시행자 : 공주시장(안전관리과장)
-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4. 소하천 정비공사의 착공 및 준공예정 연월일

- 2014년 12월 ~ 2015년 12월 (12개월)

5.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붙임” 참조

6. 준공된 소하천 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관리자 : 공주시장(안전관리과장)

7. 발생 예상 폐천부지(廢川敷地)의 면적

- 해당없음

8. 실시설계도서

- 별첨 설계도서 참조

9. 소하천 정비공사 시행지역의 위치도



10. 예정 공정표 :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구 분	보할 (%)	공사기간						비고
		2개월	4개월	6개월	8개월	10개월	12개월	
축 제 공	14		3	4	4	3		
호 안 공	21		7	7	7			
구조물공	6			3	3			
교 량 공	46		11	12	12	11		
포 장 공	2				1	1		
부 대 공	11	1	2	2	2	2	2	
월별진도	100	1	23	28	29	17	2	
누계진도		1	24	52	81	98	100	

11.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금액:백만원)

사업명	계	2013년	2014년	2015년 이후	비고
다른골 소하천 정비사업	2,955	25	1,200	1,730	2014년도 특교세 372 포함

12. 하천공사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계획

가. 편입토지 및 물건조서 : 붙임 참조

- 보상계획 공고 : 공주시 공고 2014-145호(2014. 2. 12.)

나. 보상시기 및 절차

- 보상시기 : 2014년 4월 ~
- 보상절차 및 방법 : 공주시 안전관리과에서 소유자와 계약 체결 후 지급
- 보상가액산정 : 보상가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가액에 산술 평균치

13. 기타사항

기타 공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공주시청 안전관리과 하천관리담당 (☎041-840-866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굴티 소하천 정비사업 세부 정비시행계획 -

1. 소하천 정비공사의 명칭

- 굴티 소하천 정비사업

2. 소하천 정비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본 사업은 공주시 우성면 봉현리에 위치한 굴티 소하천 정비를 통하여 집중 호우, 우기시 원활한 유수의 흐름을 유도하여 하천 유역의 영농편익과 농지 및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사업의 개요

- 사업량 : 축제 및 호안 L=1,300m, 교량4개소
- 사업비 : 2,536백만원
-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봉현리 524번지 일원

3. 소하천 정비공사를 시행하는 자의 명칭 및 주소

- 시행자 : 공주시장(안전관리과장)
-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4. 소하천 정비공사의 착공 및 준공예정 연월일

- 2014년 9월 ~ 2015년 9월 (12개월)

5.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붙임” 참조

6. 준공된 소하천 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관리자 : 공주시장(안전관리과장)

7. 발생 예상 폐천부지(廢川敷地)의 면적

- 해당없음

8. 실시설계도서

- 별첨 설계도서 참조

9. 소하천 정비공사 시행지역의 위치도



10. 예정 공정표 :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구 분	보합 (%)	공사기간						비고
		2개월	4개월	6개월	8개월	10개월	12개월	
축 제 공	14		3	4	4	3		
호 안 공	20		7	6	7			
구조물공	7			4	3			
교 량 공	46		11	12	12	11		
포 장 공	2				1	1		
부 대 공	11	1	2	2	2	2	2	
월별진도	100	1	23	28	29	17	2	
누계진도		1	24	52	81	98	100	

11.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금액:백만원)

사업명	계	2013년	2014년	2015년 이후	비고
굴티 소하천 정비사업	2,536		1,100	1,436	2014년도 특교세 166 포함

12. 하천공사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계획

가. 편입토지 및 물건조서 : 붙임 참조

- 보상계획 공고 : 공주시 공고 2014-145호(2014. 2. 12.)

나. 보상시기 및 절차

- 보상시기 : 2014년 4월 ~
- 보상절차 및 방법 : 공주시 안전관리과에서 소유자와 계약 체결 후 지급
- 보상가액산정 : 보상가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가액에 산술 평균치

13. 기타사항

기타 공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공주시청 안전관리과 하천관리담당 (☎041-840-866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새나무골 소하천 정비사업 세부 정비시행계획 -

1. 소하천 정비공사의 명칭

- 황새나무골 소하천 정비사업

2. 소하천 정비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본 사업은 공주시 계룡면 내흥리에 위치한 황새나무골 소하천 정비를 통하여 집중호우, 우기시 원활한 유수의 흐름을 유도하여 하천 유역의 영농편익과 농지 및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사업의 개요

- 사업량 : 축제 및 호안 L=750m, 교량3개소
- 사업비 : 2,117백만원
-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내흥리 530-1번지 일원

3. 소하천 정비공사를 시행하는 자의 명칭 및 주소

- 시행자 : 공주시장(안전관리과장)
-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4. 소하천 정비공사의 착공 및 준공예정 연월일

- 2014년 9월 ~ 2015년 9월 (12개월)

5.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붙임” 참조

6. 준공된 소하천 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관리자 : 공주시장(안전관리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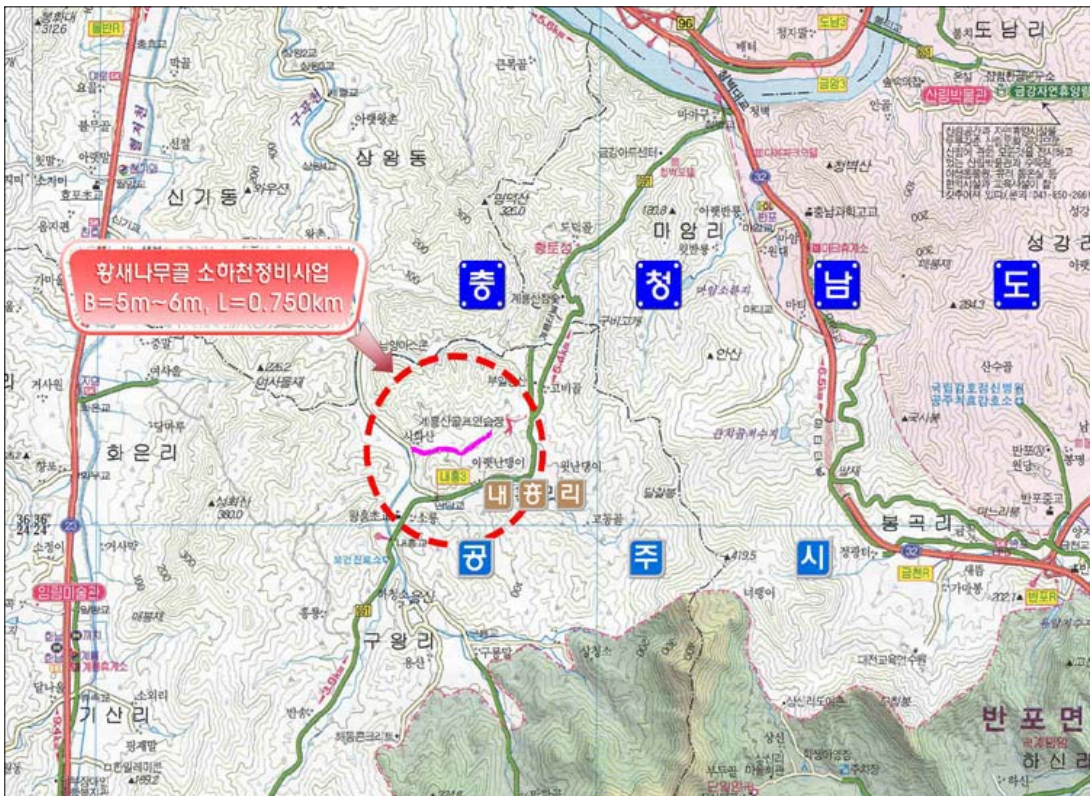
7. 발생 예상 폐천부지(廢川敷地)의 면적

- 해당없음

8. 실시설계도서

- 별첨 설계도서 참조

9. 소하천 정비공사 시행지역의 위치도



10. 예정 공정표 :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구 분	보합 (%)	공사기간						비고
		2개월	4개월	6개월	8개월	10개월	12개월	
축 제 공	16	4	4	4	4			
호 안 공	34		9	9	8	8		
배 수 공	21			7	7	7		
구조물공	15			5	5	5		
포 장 공	6				3	3		
부 대 공	8	2	1	1	1	1	2	
월별진도	100	6	14	26	28	24	2	
누계진도		6	20	46	74	98	100	

11.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금액:백만원)

사업명	계	2013년	2014년	2015년	비고
황새나무골 소하천 정비사업	2,117		1,001	1,116	2014년도 특교세 95 포함

12. 하천공사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계획

가. 편입토지 및 물건조서 : 붙임 참조

- 보상계획 공고 : 공주시 공고 2014-145호(2014. 2. 12.)

나. 보상시기 및 절차

- 보상시기 : 2014년 4월 ~
- 보상절차 및 방법 : 공주시 안전관리과에서 소유자와 계약 체결 후 지급
- 보상가액산정 : 보상가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가액에 산술 평균치

13. 기타사항

기타 공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공주시청 안전관리과 하천관리담당 (☎041-840-866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공고 제2014-1453호

공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 활동수당 지급 기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주시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금연지도원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2) 금연지도원 위촉, 임기, 해촉 절차, 활동수당을 규정함(안 제9조)

나 공주시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금연지도원의 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15년 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건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할 곳

- 주 소 : 우)314-802 충남 공주시 의당로 23(공주시보건소)
- 연락처 : 건강증진담당(☎ 041-840-8792, FAX 041-840-2341)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4. 참고사항

- 이 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 1. 공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2. 공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1부.

공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금연지도원”이란 금연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 및 계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을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을 “법 제9조4항”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과태료)”를 “(금연지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금연교육과 금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법 제9조의5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금연지도원이 법 제9조의5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연지도원을 위촉해제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관할 구역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충청남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금연지도원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10조를 제11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5. (현행과 같음) 6. “금연지도원”이란 <u>금연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 및 계도하는 사람을 말한다.</u>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u>시장</u> 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 6. (생략) ②·③ (생략)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u>시장</u> 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5항----- -----. 1. ~ 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흡연 장소의 설치 등) ① <u>시장</u> 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가 시설을 금연 건물로 지정하거나 따로 흡연구역을 설치하도록 지도·관리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7조(흡연 장소의 설치 등) ① ----- ----- <u>법」 제9조4항</u>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9조(금연지도원)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금연교육과 금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지도원이 법 제9조의5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연지도원을 위촉해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관할 구역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충청남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⑤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 4만원을 기준으로 하

<u><신 설></u> <u>제9조</u> (생 략) <u>제10조</u> (생 략)	<u>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u> <u>⑥ 그 밖에 금연지도원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u>제10조</u> (현행 제9조와 같음) <u>제11조</u> (현행 제10조와 같음)
--	--

공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금연지도원 운용 등)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른 금연지도원을 다음 각호 같이 운용한다.

1.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호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및 붙임 서류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3. 시장은 제2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 제3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5.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승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7.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위촉해제 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위촉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금연지도원 신청서

신청인	성명 (한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공주시장 귀하

첨부물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 서식]

금연지도원 추천서

신청인	성명 (한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사람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 서식]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

발행번호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발급일자	회수일자	비고 (신규/해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 서식]

제 20 - 호

**위 축 장
금 연 지 도 원**

소 속: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위 축 기 간:

위 사람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직인

210mm×297mm [백상지 80g/㎡]

[별지 제5호 서식]

(앞 쪽)
제 호 금연지도원증 사 진 3cm×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 내에 촬영한 것) 성 명 60mm×90mm
(색상 : 연파랑)
(뒤 쪽)
소 속: 성 명: 생년월일(성별): () 위 사람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법에서 정하는 감시·계도 등의 업무를 할 때에는 이 증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전화번호 : 041-930-4154
주)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m ² or 플라스틱

[별지 제6호 서식]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	성명 (한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재발급 신청사유

위 본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만명합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10mm×297mm [백상지 80g/㎡]

[별지 제7호 서식]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연 지도원	① 소속(단체명)		② 성 명	
	③ 생년월일		④ 전화번호	
	⑤ 주 소			
⑥ 출입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입 장소				
⑧ 직무수행범위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및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 금연 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조(금연지도원 운용 등) 시장</u> <u>은 조례 제9조에 따른 금연지도</u> <u>원을 다음 각호 같이 운용한다.</u> <u>1.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u> <u>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u> <u>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공주</u> <u>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u> <u>게 제출하여야 한다.</u> <u>2. 시장은 제1호에 따라 제출받</u> <u>은 신청서 및 붙임 서류를 확</u> <u>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u> <u>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u> <u>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u> <u>결정한다.</u> <u>3. 시장은 제2호에 따라 금연지</u> <u>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u> <u>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u> <u>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u> <u>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u> <u>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u> <u>발급하여야 한다.</u> <u>4. 제3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증</u> <u>을 발급받은 사람은 그 금연</u> <u>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u> <u>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u>

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5.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6.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승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7.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위촉해 제 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공인 폐기 공고

공주시 공인조례 제6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을 폐기하고,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5일

공 주 시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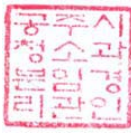
1. 폐기 공인 : 공주시시정담당관분임경리관인 외 76개 공인
2. 폐기 사유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회계관직 명칭 변경
(경리관 → 재무관)에 따른 공인 폐기
3. 폐 기 일 : 2014. 11. 29.
4. 폐기 공인 인영

소 관 부서명	신조공인명	인 영	규 격 (cm)	비 고
시정담당관	공주시시정 담당관 분임경리관인		1.8×1.8 (정 방 형) 훈민정음체 /목재	
기획담당관	공주시기획 담당관 분임경리관인		1.8×1.8 (정 방 형) 훈민정음체 /목재	

소 관 부서명	신조공인명	인 영	규 격 (cm)	비 고
인사담당관	공주시인사 담당관 분임경리관인		1.8×1.8 (정방형) 훈민정음체 /목재	
정보감사 담당관	공주시정보감사 담당관 분임경리관인		1.8×1.8 (정방형) 훈민정음체 /목재	
사 회 과	공주시사회과 분임경리관인		1.8×1.8 (정방형) 훈민정음체 /목재	
복 지 과	공주시복지과 분임경리관인		1.8×1.8 (정방형) 훈민정음체 /목재	
민 원 과	공주시민원과 분임경리관인		1.8×1.8 (정방형) 훈민정음체 /목재	
회 계 과	충청남도공주시 경리관인		1.8×1.8 (정방형) 전서체 /목재	
	공주시경리관인		1.8×1.8 (정방형) 전서체 /목재	
	공주시회계과 분임경리관인		1.8×1.8 (정방형) 전서체 /목재	

소 관 부서명	신조공인명	인 영	규 격 (cm)	비 고
회 계 과	공주시분임 경리관인		1.8×1.8 (정방형) 전서체 /목재	
세 무 과	공주시세무과 분임경리관인		1.8×1.8 (정방형) 전서체 /목재	
문화체육과	공주시문화체육과 분임경리관인		1.8×1.8 (정방형) 훈민정음체 /목재	
관 광 과	공주시관광과 분임경리관인		1.8×1.8 (정방형) 훈민정음체 /목재	
문화재과	공주시문화재과 분임경리관인		1.8×1.8 (정방형) 훈민정음체 /목재	
토 지 과	공주시토지과 분임경리관인		1.8×1.8 (정방형) 훈민정음체 /목재	
안전관리과	공주시안전관리과 분임경리관인		1.8×1.8 (정방형) 전서체 /목재	
기업경제과	공주시기업경제과 분임경리관인		1.8×1.8 (정방형) 훈민정음체 /목재	

소 관 부서명	신조공인명	인 영	규 격 (cm)	비 고
건 설 과	공주시건설과 분임경리관인		1.8×1.8 (정방형) 전서체 /목재	
산 림 과	공주시산림과 분임경리관인		1.8×1.8 (정방형) 훈민정음체 /목재	
도시재생과	공주시도시재생과 분임경리관인		1.8×1.8 (정방형) 훈민정음체 /목재	
	공주시장기미집 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 별회계경리관		1.8×1.8 (정방형) 전서체 /목재	
	공주시기반 시 설 특 별 회 계 경리관인		1.8×1.8 (정방형) 전서체 /목재	
	공주시기반 시 설 특 별 회 계 분임경리관인		1.8×1.8 (정방형) 전서체 /목재	
허 가 과	공주시허가와 분임경리관인		1.8×1.8 (정방형) 훈민정음체 /목재	
	충청남도 학교 용지부담금 특별회계공주시 경리관인		1.8×1.8 (정방형) 전서체 /목재	

소 관 부서명	신조공인명	인 영	규 격 (cm)	비 고
허 가 과	충청남도 학교 용지부담금 특별회계공주시 분임경리관인		1.8×1.8 (정방형) 전서체 /목재	
교 통 과	공주시교통과 분임경리관인		1.8×1.8 (정방형) 훈민정음체 /목재	
환 경 과	공주시환경과 분임경리관인		1.8×1.8 (정방형) 훈민정음체 /목재	
청 소 과	공주시청소과 분임경리관인		1.8×1.8 (정방형) 훈민정음체 /목재	
수 도 과	공주시수도과 분임경리관인		1.8×1.8 (정방형) 훈민정음체 /목재	
공공개발사 업 과	공주시공공개발 사업과 분임경리관인		1.8×1.8 (정방형) 훈민정음체 /목재	
5도2촌과	공주시5도2촌과 분임경리관인		1.8×1.8 (정방형) 훈민정음체 /목재	

소 관 부서명	신조공인명	인 영	규 격 (cm)	비 고
보 건 소	공 주 시 보 건 소 경리관인		1.8×1.8 (정방형) 전서체 /목재	
	공 주 시 보 건 소 분임경리관인		1.8×1.8 (정방형) 전서체 /목재	
농업기술센터	공주시농업 기술센터 경리관인		1.8×1.8 (정방형) 전서체 /목재	
	공주시농업 기술센터 분임경리관인		1.8×1.8 (정방형) 전서체 /목재	
	공주시농촌 진흥자금조성 특별회계 경리관인		1.8×1.8 (정방형) 전서체 /목재	
	공주시농촌 진흥자금조성 특별회계분임 경리관인		1.8×1.8 (정방형) 전서체 /목재	
공공시설관리 소	공주시공공시설 관리소 경리관인		1.8×1.8 (정방형) 전서체 /목재	

소 관 부서명	신조공인명	인 영	규 격 (cm)	비 고
공공시설관리소	공주시공공시설 관리소 분임경리관인		1.8×1.8 (정방형) 전서체 /목재	
관광경영사업소	공주시관광경영 사업소 경리관인		1.8×1.8 (정방형) 훈민정음체 /목재	
시립도서관	공주시시립도서관 경리관인		1.8×1.8 (정방형) 훈민정음체 /목재	
종합사회복지관	공주시종합 사회복지관 경리관인		1.8×1.8 (정방형) 전서체 /목재	
	공주시종합 사회복지관 분임경리관인		1.8×1.8 (정방형) 전서체 /목재	
유구읍	공주시유구읍 경리관인		1.8×1.8 (정방형) 전서체 /목재	
	공주시유구읍 분임경리관인		1.8×1.8 (정방형) 전서체 /목재	

소 관 부서명	신조공인명	인 영	규 격 (cm)	비 고
이인면	공주시이인면 경리관인		1.8×1.8 (정방형) 전서체 /목재	
	공주시이인면 분임경리관인		1.8×1.8 (정방형) 전서체 /목재	
탄천면	공주시탄천면 경리관인		1.8×1.8 (정방형) 전서체 /목재	
	공주시탄천면 분임경리관인		1.8×1.8 (정방형) 전서체 /목재	
계룡면	공주시계룡면 경리관인		1.8×1.8 (정방형) 전서체 /목재	
	공주시계룡면 분임경리관인		1.8×1.8 (정방형) 전서체 /목재	
반포면	공주시반포면 경리관인		1.8×1.8 (정방형) 전서체 /목재	
	공주시반포면 분임경리관인		1.8×1.8 (정방형) 전서체 /목재	

소 관 부서명	신조공인명	인 영	규 격 (cm)	비 고
의당면	공 주 시 의 당 면 경리관인		1.8×1.8 (정방형) 전서체 /목재	
의당면	공 주 시 의 당 면 분임경리관인		1.8×1.8 (정방형) 전서체 /목재	
정안면	공 주 시 정 안 면 경리관인		1.8×1.8 (정방형) 전서체 /목재	
	공 주 시 정 안 면 분임경리관인		1.8×1.8 (정방형) 전서체 /목재	
우성면	공 주 시 우 성 면 경리관인		1.8×1.8 (정방형) 전서체 /목재	
	공 주 시 우 성 면 분임경리관인		1.8×1.8 (정방형) 전서체 /목재	
사곡면	공 주 시 사 곡 면 경리관인		1.8×1.8 (정방형) 전서체 /목재	
	공 주 시 사 곡 면 분임경리관인		1.8×1.8 (정방형) 전서체 /목재	

소 관 부서명	신조공인명	인 영	규 격 (cm)	비 고
신평면	공주시 신평면 경리관인		1.8×1.8 (정방형) 전서체 /목재	
	공주시 신평면 분임경리관인		1.8×1.8 (정방형) 전서체 /목재	
중학동	공주시 중학동 경리관인		1.8×1.8 (정방형) 전서체 /목재	
	공주시 중학동 분임경리관인		1.8×1.8 (정방형) 전서체 /목재	
웅진동	공주시 웅진동 경리관인		1.8×1.8 (정방형) 전서체 /목재	
	공주시 웅진동 분임경리관인		1.8×1.8 (정방형) 전서체 /목재	
금학동	공주시 금학동 경리관인		1.8×1.8 (정방형) 전서체 /목재	
금학동	공주시 금학동 분임경리관인		1.8×1.8 (정방형) 전서체 /목재	

소 관 부서명	신조공인명	인 영	규 격 (cm)	비 고
옥룡동	공주시옥룡동 경리관인		1.8×1.8 (정방형) 전서체 /목재	
	공주시옥룡동 분임경리관인		1.8×1.8 (정방형) 전서체 /목재	
신관동	공주시신관동 경리관인		1.8×1.8 (정방형) 전서체 /목재	
	공주시신관동 분임경리관인		1.8×1.8 (정방형) 전서체 /목재	
월송동	공주시월송동 경리관인		1.8×1.8 (정방형) 훈민정음체 /목재	
	공주시월송동 분임경리관인		1.8×1.8 (정방형) 훈민정음체 /목재	

도시계획시설(도로, 공공공지) 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신관동 358-4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 공공공지) 부지 내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14. 12. 15.

공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신관동 358-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공공공지)
- 명 칭 : 신관동 OO아파트 주택건설사업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구 역 명	면 적(㎡)	규 모				비 고
		공공공지	중로1-8	소로1-32	소로2-165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공공지)	기정 : 2,991 변경 : 2,939 감)52	면적:1,384㎡ →1,438㎡	폭:20~23m 연장:150→109m 면적:416㎡ →310㎡	폭:10m 연장:65m 면적:647㎡ (변경없음)	폭:8m 연장:67m 면적:544㎡ (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 : 기정 - (주)미래아이개발 대표이사 황 일 권
 변경 - 아시아신탁(주) 대표이사 배 일 규

5. 변경 인가사항

종류	명칭	위치 (도로의 경우 시·종점)		규모 (면적 또는 폭원 및 연장)			시행 내용의 범위	비고
		시점	종점	구역내 면적	폭원	연장		
도로	기 정	중로1-8	대로3-5	대로1-2	416	20~23	949 (150)	사업지구간 개설
	변 경	중로1-8	대로3-5	대로1-2	310	20~23	949 (109)	사업지구간 개설
	기 정	소로1-32	중로1-8	소로2-165	647	10	65	전체 개설
	변 경	소로1-32	중로1-8	소로2-165	647	10	65	전체 개설
	기 정	소로2-165	소로1-32	6호근린 공원구역계	544	8	67	전체 개설
	변 경	소로2-165	소로1-32	6호근린 공원구역계	544	8	67	전체 개설
공공 공지	기 정	공공공지	대로 1-2호선변		26,005(1,384)		사업지구간 개설	
	변 경	공공공지	대로 1-2호선변		26,005(1,438)		사업지구간 개설	

6. 사업기간 : (변경 인가일) ~ 2017. 12. 31.

7. 공람기간 : 2014. 12. 15. ~ 12. 29. (시보게재일로부터 14일간)

8. 공람장소 : 공주시청 도시재생과(☎ 041-840-8550)

9. 의견제출 : 공람기간 내 도시계획시설사업(변경) 인가 신청서류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공고 제2014 - 1486호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공주시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 및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공주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주시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2장)
 - ※ 공주시 조례 제831호 공주시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내용을 준용하여 본 조례 제2장에 담고,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에 따라 기존조례는 폐지
- 지정지구의 행위제한 및 허가 시 고려사항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장)
-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의 보조금 지원 기준과 지급 절차(안 제4장)
- 사업시행자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단체는 2015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주시장(문화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 사항 등
- 4) 의견 제출할 곳

○ 주소: (우)314-050 충남 공주시 국고개길20(중동) 공주시 문화재과

○ 전화: 041)840-8229, FAX: 041)840-2321

- 5)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문화재과 고도보존담당(041-840-8229)에 문의 바랍니다.

붙임: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주시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하고 고도지구 내 주민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역사문화환경”이란 고도의 생성·발전 과정의 배경이 되는 자연 환경과 역사적 의의를 갖는 유형·무형의 문화유산 등 고도를 구성하고 있는 일체의 요소를 말한다.
2. “지정지구”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지구를 말한다.

가. 특별보존지구 :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핵심이 되는 지역으로 그 원형을 보존하거나 회복되어야 하는 지역

나. 보존육성지구 : 고도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지역이나, 특별보존지구 주변의 지역 등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주민지원사업”이란 공주시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지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한옥”이란 주요구조부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5. “한옥건축양식”이란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거나 또는 이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건축한 것을 말한다.

6.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이란 한옥·한옥건축양식·가로변 건축물·경관시설물 등의 설치 및 외관 개선, 담장 및 마을길 조성, 폐가 정비 등을 통하여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가꾸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고도의 보존육성을 위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제4조(기능)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고도 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주시 고도 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3. 고도보존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4.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고도보존육성관리지침의 수립, 변경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시의회의원
2.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4명 이내의 지역주민대표
3. 문화재, 경관 및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각 3명 이내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고도보존육성업무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⑤ 민간위원의 위촉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회의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자료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의결방법) ① 의안은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부결 · 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결의 방법은 위원장이 거수 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명투표지에 따른 기명투표 중에서 정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 제척 · 회피) ①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해당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 할 수 있다.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공주시의회 의원, 주민대표 위원 중에서 3명 이내, 문화재 · 도시계획 · 경관 전문가 위원 중에서 4명 이내를 위원장이 지명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중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사항

2. 위원회가 소위원회에 심의를 위임하기로 의결한 사항

④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0조(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긴급한 안전이나,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서면심의를 할 경우 각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 기명투표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전을 서면심의하였을 때에는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련 공무원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12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3조(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제한) 특별보존지구 안에서는 법 제1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행위는 할 수 있다.

제14조(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제한) ① 보존육성지구 안에서 법 제1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이 종료된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허가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허가처리 기한을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허가시 고려사항 등)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결정 할 때에는 허가를 신청한 행위에 대하여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 기준을 따른다.

제4장 주민지원 등

제16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증대사업
2. 복리증진사업
3.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
4.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사업
5. 이주대책 수립사업
6. 역사문화체험학습장·전통 문화예술공방의 설치 및 지원사업
7. 마을도서관·전시관의 건립 및 운영사업
8. 지정지구의 주민 우선 고용에 관한 사업

9.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개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주민단체의 운영 및 지원사업
10.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의, 교육문화사업, 관광사업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지원) ① 시장은 지정지구에서 거주하는 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 등 주민지원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8조(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에 대한 보조금 신청) ① 조례 제17조의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상세히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성명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4. 세부 설계도면 및 사업비 산출내역서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9조(지원결정 등) ① 시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설계내용 검토 및 고도보존육성관리지침의 반영 여부 등을 확인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급여부 및 지원예정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과 함께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후 공사(설치)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표·발굴 조사
2. 동절기(12월~2월)와 착수시기가 겹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에 의해 공사착수가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20조(보조금의 지급) ① 제19조에 따라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착수 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설치를 완료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완료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표·발굴 조사
2. 천재지변 등에 의한 공사중지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완료 신고서가 접수되면 시장은 제19조제3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의 이행여부 및 사업완료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③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

른 건축물의 사용 승인 후 지급한다.

제21조(사후관리) 시장은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장을 작성하고 보조금 지급현황 및 용도변경 등의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구조 및 용도변경 등) 제20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지원받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행위
2. 지원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제23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축물 및 시설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권자가 이 조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기존 소유자 혹은 영업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과 지원 조건을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알리고, 별지 제10호서식의 권리·의무 승계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지원한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착수 기한을 연장한 경우 해당 기한) 이내에 공사(설치)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0조제1항에 따라 착수 신고를 한 날부터 1년(완료기한을 연장한 경우 해당 기한) 이내에 공사(설치)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4. 보조금을 부정한 수단으로 받거나 지급조건을 어겨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 한 경우
 5. 보조금을 지원 받은 소유자 등이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보조금을 지원 받은 건축물을 시장에게 매수청구 하는 경우(공익사업시행으로 매수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② 시장은 보조금 지원을 받은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 등이 임의로 철거·멸실·용도변경을 하거나, 보조금 지급조건 등을 위반하여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지원액의 환수 또는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등을 하고자 할 때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5조(중복지원 금지) ① 제2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축물 및 시설물의 소유자(배우자를 포함한다)에게는 보조금을 다시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종류를 달리하여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자는 제18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할 수 없다.

제2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의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주민단체의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고도 지정지구의 보존 및 육성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민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단체의 활동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고도 지정지구 안에 있는 시 소유의 재산을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주민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를 할 수 있다.

제5장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등

제28조(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시행을 위하여 시 출연기관 및 관련기관 단체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법 제21조 및 「지방세특별제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고도 지정지구 안에 있는 시 소유의 재산을 보존
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지정지구의 보존 및 육성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제30조(시행규칙 등)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고도의 경관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은 지침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공주시 고도보존육성지역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적용례) 제18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물 공사나 시설물
설치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시행 중이거나 종전의 관련 규정에 따른
처분과 그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표]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제17조제2항 관련)

1. 주거환경개선사업

구분	한옥	한옥건축양식
지원 기준	가. 비한옥 및 불량한옥을 한옥으로 신축, 개축, 재축하는 경우 · 단독주택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1억원 · 근린생활시설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8천만원 나. 한옥으로 신축, 증축하는 경우 · 단독주택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8천만원 · 근린생활시설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6천만원 다. 한옥을 수선·대수선하는 경우 · 단독주택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5천만원 지원 · 근린생활시설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3천만원 지원	가. 한옥건축양식으로 신축, 개축, 재축, 증축하는 경우 · 단독주택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5천만원 · 근린생활시설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3천만원 나. 한옥건축양식으로 수선·대수선하는 경우 · 단독주택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3천만원 · 근린생활시설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2천만원

비고

1.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복합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보조금은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지원 기준에 따른다.
2. 외관 공사비가 총공사비용의 2분의1 이상이어야 하며, 외관 공사비가 총공사비용의 2분의1 미만인 경우에는 외관 공사비의 2배를 총공사비용으로 산정한다.
3. 지원대상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단독주택,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한한다.
4. 공사비용은 건축사가 설계한 국토교통부 기준 건설공사 표준 품셈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문화재 조사 및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공사비용에 포함한다.
5. 지원대상 건축물 중 공용건축물, 정부투자기관, 등록문화재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6. 지구지정(2012. 3. 5) 이전부터 고도지구에 거주하였거나, 고도보존육성사업 추진과정에 거주주택이 편입되어 지구내로 이주하는 주민이 신축하는 한옥에 대한 지원기준은 한옥건축의 “가”목을 따른다.

2. 가로경관개선사업

구분	담장, 대문	가로변 건축물 외관정비	간판시설
지원 기준	총 시설비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3천만원 지원(간판시설 포함)	설치비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2백만원 지원

비고

1. 가로경관 개선사업 내에서는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2. ‘가로변 건축물’이란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도로 중 소로(3류) 이상 규모의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도로와 제민천변에 접해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기 명 투 표 지

20xx년도 제○차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20xx. 00. 00)					위원 ○○○ (서명)	
안 건 명	가결		부결	보류	접수	의 건
	원안	조건부				
《심의사항》						
1.						
2.						
3.						
4.						
《검토사항》						
5.						
6.						
《보고사항》						
7.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호서식]

의 결 서

20xx년도 제○차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의결 연월일 ○○○○년 ○월 ○일

(심의)
사항

(안전 명)

(의결 내용)		
의결정족사항		출석(명), 찬성(명), 반대(명), 기권(명) / 제척 등 (명)
공개 여부	공 개	☐
	비공개	☐ (사유 :)

《특기사항》 (상기 의결내용과 다른 의견으로서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경우 해당 위원명과 함께 기술)

간 사		위원장 ○○○	위원 ○○○						
서 기									

[별지 제3호서식]

회 의 자 료

20xx년도

제○차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 일 시 : 0000. 00. 00(요일), 00:00 ~ 00:00

□ 장 소 : ○○

공주시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목 차

【심의사항】

1		(공개)
2		(비공개)
3		
4		
5		

【검토사항】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보고사항】

21		
22		

심의사항

안전번호 고도 (연도)-(차수)-(연번)

1. (안전 제목)

가. 제안사항

○

나. 제안사유

○ (안전이 신청되고 부의된 경과, 경위 등을 요약 서술)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2) 대상문화재명 :

○ 소재지 :

○ 지정일 :

○ (이하 대상문화재 현황 등 개요 기술)

(3) 신청내용

○

라. 검토의견 (또는 현지조사 의견)

○

마. 참고사항

○

위 축 동 의 서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0000년 00월 00일

본인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 위원
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공주시 고도보존육성
지역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에 동의하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관계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0000년 00월 00일

성 명 : 0 0 0 (서명)

공 주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 본인 사진이 첨부된 이력서 1부

위 축 장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0000년 00월 00일

귀하를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2의에 따라
공주시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xx.00.00 ~ 20xx.00.00)

20xx년 월 일

공 주 시 장

보조금 지원(변경)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지원구분	주거환경	한옥	☐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수선 ☐ 대수선	
	개선사업	한옥건축양식	☐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수선 ☐ 대수선	
	가로경관개선사업		☐ 담장 ☐ 대문 ☐ 가로경관 건축물 ☐ 간판시설	
신청내역	공사(설치)금액		원	신청금액 원
	사업량 (면적, 규격 등)		사업기간	20 . . ~ 20 . .
	기타(특이사항)			
사업 대상지 현황	위치		번지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구조	☐ 한옥 ☐ 비한옥
	건폐율(%)		용적률(%)	
종전	지원금액		원	지원기관(부서)
보조금 지원내역	※ 다른 기관(부서)에 의해 신청인 및 건축주(세대원 포함)가 보조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는 경우 에도 기재 하여야 함.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지원(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				
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지(건축물)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4.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공사(설치)에 필요한 설계도면(변경 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1부. 5. 공사(설치)비용 산출내역서(견적서 등) 1부. 6. 간판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원색도안을 포함한 서류 1부(간판시설 지원 시에 한함).			수수료
				없음

착수 신고서				
신 고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위 치				
지원결정번호		지원결정일		
착 수 일				
사업기간				
설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사무소명	(전화번호:)		
	주 소			
공사시공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회 사 명			
	주 소	(전화번호:)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287 -

완료 신고서					
신 고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소 재 지					
지원결정번호			지원결정일		
착 수 일					
공사기간					
설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사무소명		(전화 :)		
	사무소주소				
공사시공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회 사 명				
	주 소		(전화 :)		
지 원 구 분	주거환경 개선사업	한옥	☐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수선 ☐ 대수선		
		한옥건축양식	☐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수선 ☐ 대수선		
	가로경관개선사업		☐ 담장 ☐ 대문 ☐ 가로경관 건축물 ☐ 간판시설		
사업대상지 현황	층 수			연 면 적	m ²
	건 폐 율		%	용 적 율	%
	지붕면적		m ²	용 도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공사(설치) 전후 현황사진 각 1부 2. 공사(설치)비 정산서류(집행내역서 등) 1부 3. 완료 도면(당초 심의와 동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288 -

구조 및 용도변경 등의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소 재 지			대지면적	m ²
용도지구				
보조금액				
보조금수령일				
구 분	☐ 기둥, 지붕틀, 외벽, 서까래, 기와를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 ☐ 건축물의 용도변경 ☐ 경관조성 시설물을 해체하거나 수선·변경			
건축물 현황	층 수		연 면 적	m ²
	건 폐 율	%	용 적 율	%
	구 조		용 도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용도변경 등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 2. 현황사진(전경사진, 내부사진 등)			

- 289 -

【별지 제10호서식】

권리·의무 승계서					
승계대상	위치			용도	
	수량	(동, 개)		면적(규격)	(㎡, m)
보조금 지원현황	지원구분	주거환경 개선사업	한옥	☐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수선 ☐ 대수선	
			한옥건축양식	☐ 신축 ☐ 증축 ☐ 개축 ☐ 수선 ☐ 수선 ☐ 대수선	
		가로경관개선사업		☐ 담장 ☐ 대문 ☐ 가로경관 건축물 ☐ 간판시설	
	보조금액			보조금 교부일	
권리 의무 승계	기존 소유권자(인계자)			새로운 소유권자(인수자)	
	성명	(인) (전화:)		(인) (전화:)	
	생년월일				
	주소				
	내용	소유권 변경에 따라 보조금 지원 내용과 지원조건 등을 인지하고 『공주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에 동의함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					
붙임서류	소유권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공공청사)사업 완료공고

공주시 금흥동 98-5번지 일원의 충남교육연수원 강의동 및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시행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 공공청사) 사업이 완료되었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5일

공 주 시 장

1. 위 치 : 공주시 금흥동 98-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 공공청사) 사업
- 명 칭 : 충남교육연수원 강의동 및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3. 시행자 : 충청남도교육감

4. 사업내용

구 분	부지면적(㎡)	사업개요	비고
공공청사	102,201	• 충남교육연수원 강의동 및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 건축면적 : 8,949.31 → 11,491.26㎡ - 연 면 적 : 19,942.09 → 24,020.73㎡ - 강 의 동 : 2,538.43㎡(지하1층, 지상3층) - 강 당 동 : 1,540.21㎡(지상3층)	

5. 사업기간 : 2013. 07. 01.(인가일) ~ 2014. 12. 31.

공주시 공고 제2014-1494호

「공주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2월 1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사유

- 동 조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수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라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지원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 「수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해제(충청남도 공고 제2011-756호, 2011. 8. 30.)**됨에 따라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정하는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에서 제외되어 조례 폐지함.

※ 단, 금강수계법 제21조 및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유구상수원보호구역은 금강수계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2. 주요내용

- 공주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

3. 의견제출

이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환경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환경과

주 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 314 - 702

전 화 : 041) 840 - 8530 FAX : 041) 840 - 2329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

공주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